

디자인법조약(DLT) 가입을 대비한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24.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법조약 가입을 대비한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4년 5월 8일 ~ 2024년 12월 15일

○ 참 여 연 구 원

· 연 구 책 임 자 :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요 약 문

- 산업재산권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특허법 조약(PLT : Patent Law Treaty)이,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 채택된 바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DLT : Riyad Design Law Treaty)까지 최종 채택
- 디자인법조약은 특허법조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같은 절차조약으로, 산업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 및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해외 출원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규범임
- 디자인법조약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약 20년간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는 서명하였으나 조약에는 가입, 서명하지 않은 바, 장치 조약 가입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법조약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법과 매칭하여 기초적인 정합성을 검토하였음
- 향후 조약과 국내법의 구체적 정합성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더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디자인법조약, DLT, 절차조약, 산업디자인

목 차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1
II. 디자인법조약 개요	2
 제2장 디자인법조약 분석	5
I. Article의 분석	5
1. 제1조 정의(Abbreviated Expressions)	5
2. 제2조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31
3. 제3조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Application Industrial Design to Which This Treaty Applies)	51
4. 제4조 출원(Application)	71
5. 제5조 대리인 ;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Address for Correspondence)	72
6. 제6조 출원일 (Filing Date)	83
7. 제7조 공지예외기간 (Grace Period for Filing in Case of Disclosure)	74
8. 제8조 창작자 명의 출원 (Requir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or)	6
9. 제9조 하나 이상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Amendment or Division of Application Including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5
10.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65
11. 제11조 산업디자인의 전자시스템 (Electronic Industrial Design System)	6
12. 제12조 서류제출 (Communications)	26
13. 제13조 갱신 (Renewal)	07

14. 제14조 기한의 구제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4· 7
15. 제15조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38
16.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1· 9
17.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99
18. 제18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의 변경·취소 신청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61
19. 제19조 실시권 미기록의 효과 (Effects of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	901
20.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Indication of the License)	41
21.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 신청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17
22. 제22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621
23. 제23조 오류의 정정 (Correction of a Mistake)	11
24. 제24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041
25. 제25조 시행규칙 (Regulations)	4
26. 제26조 총회 (Assembly)	4
27. 제27조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4
28. 제28조 개정 (Revision)	3
29. 제29조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351
30. 제30조 발효 :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6
31. 제31조 유보 (Reservations)	8
32. 제32조 조약의 탈퇴 (Denunciation of the Treaty)	21
33. 제33조 조약의 언어 : 서명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461
34. 제34조 기탁처 (Depositary)	6

II. Regulation의 분석	17
1. 제1조 정의(Abbreviated Expressions)	71
2. 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Application)	91
3. 제3조 도면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11
4. 제4조 대리인,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971
5.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Filing Date)	21
6.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Publication)	31
7. 제7조 서류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Communications)	41
8. 제8조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특정 (Identification of an Application Without its Application Number)	10
9. 제9조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newal)	21
10.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13
11.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Under Article 15)	61
12.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nd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Under Article 16)	891
13. 제13조 실시권·담보권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담보권 등록의 변경·취소 신청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or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92
14. 제14조 소유권 변경 기록의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10
15. 제15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or Address)	92

16. 제16조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8
17. 제17조 국제표준양식 견본 (Model International Forms)	12
18. 제18조 조약 제22조제3항제a호에 따른 만장일치 요건 (Requirement of Unanimity Under Article 25(3)(a))	22
 제3장 결론	 23
 [붙임 1] 2024 WIPO 외교회의 - DLT와 Regulation에 대한 검토 및 아국대응 시나리오	 216

<표 차례>

표 1 Riyadh Design Law Treaty (RDLT)	1
표 2 참고 조약	2
표 3 DLT 논의 주요 연혁	2
표 4 디자인법조약의 구성(원문 기준)	2
표 5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	22
표 6 조약 제4조 관련 국내법	23
표 7 DLT 조약의 기재요소와 국내법 비교	24
표 8 (참고) Diplomatic Conference on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2024. 5. 13- 5. 24. Geneva) 주요내용	5... 2
표 9 국외 디자인 출원 절차에서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출처공개 관련 규정	25
표 10 재외자에 관한 참고 판례(특허법 제5조의 해석)	3
표 11 조약 제4조 관련 국내법 개정 시 고려사항	3
표 12 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출원일 인정을 위한 허용 요건	4
표 13 조약 제6조 관련 국내법	4
표 14 PLT와 STLT에서의 구체조치 비교	97
표 15 판례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해석	90
표 16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해석	9
표 17 DLT 제24조의 기술지원 원칙의 해설	12
표 18 DLT 제24조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의 내용	12
표 19 조약 제31조에 따른 유보조항(1)	6
표 20 조약 제31조에 따른 유보조항(1)	6
표 21	172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 디자인 출원·등록절차 및 관련 요건에 대해 국가 간 통일된 기준 설정을 위해 「디자인법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2024년 외교회의(2024 Riyadh Diplomatic Conference on Design Law, '24.11.11~22,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최종성안(이하 디자인법조약에 대하여 'RDLT' 또는 '디자인법조약' 또는 '조약'이라 함)

표 1 Riyadh Design Law Treaty (RDLT)

- 조약에 가입한 국가 및 기타 정부간 조직이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관련한 형식의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출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간소화되고 조화된 프로세스를 제공
- (주요 내용)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이나 수수료 단순 납부 등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 강요할 수 없음 ▲잘못된 기재 등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이후에도 2개월 동안의 구제 기간을 추가 제공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비밀디자인 등 디자인권 강화를 위한 선진 제도 마련 ▲전통 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 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우리나라도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조약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단 조약 가입 서명은 하지 않았음
- 디자인법조약이 타결됨에 따라, 해당 조약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향후 조약 가입 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조약 가입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2024년 11월 타결된 디자인법조약의 본문(Article)과 시행규칙(Regulation)의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현행 국내 법령과의 대조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은 기본적으로 ① 조약문에 대한 한글 번역, ② 다른 절차조약(PLT, STLT)과의 비교, ③ 조문의 내용에 대한 해설, ④ 조문에 대응하는 국내법, ⑤ (해당 조문에 특정 쟁점이나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경우) 쟁점 및 향후과제의 순으로 작성함
- 타 절차조약과의 비교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특정 쟁점이나 국내법과의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 기재를 생략하였음

II. 디자인법조약 개요

- 디자인법조약은 세계 출원인의 권리취득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 출원, 등록절차 및 요건에 대해 국가 간 통일화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조약임
- 관련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 조약인 특허법조약(PLT), 상표에 관한 절차조약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이 존재함

표 2 참고 조약

- 특허법 조약 (Patent Law Treaty, PLT)
 - 2000. 6. 1. 제정 (국내 미비준)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STLT)
 - 2006. 3. 27. 제정, 2016. 7. 1. 국내 발효

- 디자인법조약은 논의 과정의 쟁점으로서 ① 개도국의 기술지원 조항에 대한 미국과 아프리카 그룹의 견해차가 지속된 바 있으며, ②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의 출처공개 관련 조항에 관하여 아프리카 그룹 및 선진국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표 3 DLT 논의 주요 연혁

- 제32차 SCT¹⁾ (2014. 11. 24. ~ 11. 26.) : 아프리카 그룹이 디자인 출원서에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관련 정보 및 출처를 기재하도록 제안
- 제33차 SCT (2014. 3. 16. ~ 3. 20.) : DLT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 확인
- 제35차 SCT (2016. 4. 25. ~ 4. 27.) : DLT Regulation 초안에 관한 논의
- 2017~ 2019 기간 동안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LT 관련 논의 중단
- 제41차 SCT (2019. 4. 8. ~ 4. 11.) : DLT Regulation 초안에 관한 논의
- 제46차 SCT (2022. 11. 21. ~ 11. 23.) : D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SCT 3차 특별위원회 (2023. 10. 2. ~ 10. 6.) : DLT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
- 외교회의 (2024. 11. 11. ~ 11. 22.) :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의정서 채택

1)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 ; WIPO의 회원국 및 옵저버가 산업디자인에 대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포럼

표 4 디자인법조약의 구성(원문 기준)

본문(Article)		시행규칙(Regulation)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Rule 1	Abbreviated Expressions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Article 3	Appl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is Treaty Applies		
Article 4	Application	Rule 2	Details Concerning the Application
		Rule 3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rticle 5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Rule 4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Article 6	Filing Date	Rule 5	Details Concerning Filing Date
Article 7	Grace Period for Filing in Case of Disclosure		
Article 8	Requir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or		
Article 9	Amendment or Division of Application Including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Article 10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Rule 6	Details Concerning Publication
Article 11	Electronic Industrial Design System		
Article 12	Communications	Rule 7	Details Concerning Communications
		Rule 8	Identification of an Application Without its Application Number
Article 13	Renewal	Rule 9	Details Concerning Renewal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Rule 10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Article 15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Rule 11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Under Article
Article 16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Rule 12	Details Concerning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nd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Under Article 16

본문(Article)		시행규칙(Regulation)	
Article 17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Rule 13	Detail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or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Article 18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Article 19	Effects of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Article 20	Indication of the License		
Article 21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Rule 14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Article 22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Rule 15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or Address
Article 23	Correction of a Mistake	Rule 16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Article 24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rticle 25	Regulations	Rule 17	Model International Forms
Article 26	Assembly		
Article 27	International Bureau		
Article 28	Revision		
Article 29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Article 30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Article 31	Reservations		
Article 32	Denunciation of the Treaty		
Article 33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Article 34	Depositary		

제2장 디자인법조약 분석

I. Article의 분석

1. 제1조 정의(Abbreviated Expressions)

원문	번역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제1조 정의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이 조약의 목적상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i)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y to this Treaty;	(i) "체약당사자" : 이 조약의 모든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ii) "Office" means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ii) "행정청" : 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말한다.
(iii) "registration" means the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or the grant of a patent for an industrial design, by an Office;	(iii) "등록" : 행정청의 산업디자인 등록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 허여를 말한다.
(iv)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v) "출원" : 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v) "applicable law" means,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 State, the law of that State and,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legal enactments under which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perates;	(v) "관련법" :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당해 국가의 법률, 그리고 정부간기구인 경우 당해 정부간기구에 작용하는 법제를 말한다.
(vi)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s", where the application or the registration include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vi) "산업디자인" : 출원이나 등록이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복수디자인"으로 해석한다.

원문	번역
(vii) references to a “perso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vii) “사람/자” :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지칭한다.
(viii) “procedure before the Office” means any procedure in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x) “서류제출” : 행정청에 제출되는 모든 출원서, 신청서, 신고서, 선언서, 서신 또는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기타 정보를 말한다.
(ix) “communication” means any application, or any request, declaration, document, correspondence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hich is filed with the Office;	(ix) “서류제출” : 행정청에 제출되는 모든 출원서, 신청서, 신고서, 선언서, 서신 또는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x) “records of the Office” mean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Office, relating to, and includ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rrespective of the medium in which such information is stored;	(x) “행정청의 기록” : 정보보관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출원과 등록과 관련되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수집된 정보를 말한다.
(xi) “applicant” means the person whom the records of the Office show,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 as the person who is applying for registration, or as another person who is filing or prosecuting the application;	(xi) “출원인” :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출원을 진행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청의 기록에 기재되는 자를 말한다.
(xii) “holder” means the person shown in the records of the Office as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	(xii) “디자인권자” : 행정청의 기록에 등록권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xiii) “Paris Convention” mean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on March 20, 1883, as revised and amended;	(xiii) “파리협약” : 1883년 3월 20일 체결된 후 개정 및 수정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xiv) “license” means a license for the use of an industrial design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xiv) “실시권” :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말한다.

원문	번역
(xv) "licensee" means the person to whom a license has been granted;	(xv) "실시권자" :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xvi) "Regulations" means the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5;	(xvi) "시행규칙" : 제25조에 명시된 시행규칙을 말한다.
(xvii) "Diplomatic Conference" means the convocation of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urpose of revising the Treaty;	(xvii) "외교회약" :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계약당사자들의 회의를 말한다.
(xviii) "Assembly" means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26;	(xviii) "총회" : 제26조에 명시된 총회를 말한다.
(xix) references to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approval;	(xix) "비준서" : 수락서와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xx) "Organization"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xx) "기구(WIPO)" :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xxi) "International Bureau"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xxi) "국제사무국" : WIPO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xxii) "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rganization;	(xxii) "사무총장" : WIPO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xxiii) references to an "Article" or to a "paragraph", "subparagraph" or "item" of an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corresponding rule(s) under the Regulations.	(xxiii) "조", "항", "호" 또는 "목" :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y to this Treaty;	(xviii)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s party to this Treaty;	(xiii)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y to this Treaty;
(ii) “Office” means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entrusted with the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i) “Office” means the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entrusted with the granting of patents or with other matters covered by this Treaty;	(i) “Office” means the agency entrusted by a Contracting Party with the registration of marks;
(iii) “registration” means the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or the grant of a patent for an industrial design, by an Office;		(ii) “registration” means the registration of a mark by an Office;
(iv)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i)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a patent, as referred to in Article 3;	(iii)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v) “applicable law” means,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 State, the law of that State and,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legal enactments under which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perates;	(xix) “applicable law” means,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 State, the law of that State and,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legal enactments under which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perates;	

DLT	PLT	STLT
(vi)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s”, where the application or the registration include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iii) “patent” means a patent as referred to in Article 3;	
(vii) references to a “perso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iv) references to a “pers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in particular,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v) references to a “perso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viii) “procedure before the Office” means any procedure in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xiv) “procedure before the Office” means any procedure in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patent;	(viii) “procedure before the Office” means any procedure in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ix) “communication” means any application, or any request, declaration, document, correspondence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hich is filed with the Office;	(v) “communication” means any application, or any request, declaration, document, correspondence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an application or patent, whether relating to a procedure under this Treaty or not, which is filed with the Office;	(iv) “communication” means any application, or any request, declaration, correspondence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hich is filed with the Office;
(x) “records of the Office” mean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Office, relating to, and includ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rrespective of the medium in which such	(vi) “records of the Office” mean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Office, relating to and including the applications filed with, and the patents granted by, that Office or another authority with effect	

DLT	PLT	STLT
information is stored;	for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rrespective of the medium in which such information is maintained;	
(xi) "applicant" means the person whom the records of the Office show,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 as the person who is applying for registration, or as another person who is filing or prosecuting the application;	(viii) "applicant" means the person whom the records of the Office show,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 as the person who is applying for the patent, or as another person who is filing or prosecuting the application;	
(xii) "holder" means the person shown in the records of the Office as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	(ix) "owner" means the person whom the records of the Office show as the owner of the patent;	(vi) "holder" means the person whom the register of marks shows as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
(xiii) "Paris Convention" mean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on March 20, 1883, as revised and amended;	(xvi) "Paris Convention" mean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on March 20, 1883, as revised and amended;	(ix) "Paris Convention" mean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at Paris on March 20, 1883, as revised and amended;
(xiv) "license" means a license for the use of an industrial design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xi) "license" means a license for the use of a mark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xv) "licensee" means the person to whom a license has been granted;		(xii) "licensee" means the person to whom a license has been granted;
(xvi) "Regulations" means the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3;		(xx) "Regulations" means the Regulations under this Treaty that are referred to in Article 22;
(xvii) "Diplomatic Conference" means the convocation of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urpose of		(xiv) "Diplomatic Conference" means the convocation of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urpose of revising or

DLT	PLT	STLT
revising the Treaty;		amending the Treaty;
(xviii) “Assembly” means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24;		(xv) “Assembly” means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23;
(xix) references to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approval;	(xx) “instrument of rat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instruments of acceptance or approval;	(xvi) references to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approval;
(xx) “Organization”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xxi) “Organization”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xvii) “Organization”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xxi) “International Bureau”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xxii) “International Bureau”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xviii) “International Bureau”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xxii) “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rganization;	(xxiii) “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rganization.	(xix) “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rganization;
(xxiii) references to an “Article” or to a “paragraph”, “subparagraph” or “item” of an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corresponding rule(s) under the Regulations.		(xxi) references to an “Article” or to a “paragraph”, “subparagraph” or “item” of an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corresponding rule(s) under the Regulations;

나. 해설

-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항을 해석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대부분의 조약 제1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 약어, 해설 등을 규정
- 조문의 제목에 해당하는 Abbreviated Expressions의 경우 타 조약에서 통상 “약칭”으로 번역·해석하고 있음. 단 이는 조약 및 국내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또는 “정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임

- 제1조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application”이라는 용어는 특허 제도 내에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과(디자인특허) 별도의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 하에서 산업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이에, “registration” 역시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허여와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 내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모두 포함함²⁾
- 제1조 제4호의 application의 경우 단일출원과 복수출원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
- 제1조 제8호의: “procedure before the Office”라는 표현은 신청인, 디자인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행정청에서의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청과 소통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함. 이는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므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는 신청서 제출, 실시권에 관한 기록 신청, 수수료 납부, 행정청의 통지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 또는 번역본의 제출이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신청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의 발급, 서류 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과 같이 신청 또는 등록과 관련된 절차과정에서 행정청이 신청인, 디자인권자, 이해관계인에게 연락하는 절차도 포함되며 이 점에서 제1조 제9호와 구분
- 제1조 제9호의 “Communication”의 경우 PLT에서 “제출서류”로 STLT에서 “통보”로 번역하고 있음. 해당 용어의 경우 권리허여 등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제출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바, 우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서류제출”(디자인보호법 제28조)로 번역함. Communication은 행정청에 “접수된” 사안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행정청에서 신청인이나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내는 통지 등은 해당 항목에서 정의된 Communication에 해당하지 않음³⁾
- 제1조 제10호에서는 records of the Offic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디자인 등록부(디자인공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임. 관련하여 개별 계약당사자에서 “산업디자인등록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⁴⁾

2) DLT note 1.01

3) DLT note 1.04

4) DLT note 1.05

2. 제2조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원문	번역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제2조 일반원칙
(1) [No Regulation of Substantive Industrial Design Law] Nothing in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is intended to be construed as prescribing anything that would limit the freedom of a Contracting Party to prescribe such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relating to industrial designs as it desires.	(1) [실체적 산업디자인법에 관한 미규정] 본 조약 또는 시행규칙의 어느 내용도 계약당사자가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실체법 규정을 제정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Relation to Other Treaties]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any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any other treaties.	(2)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본 조약의 어느 내용도, 다른 조약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상호의무로부터 이탈시키지 못한다.
(3) [More Favorable Requirements]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provide for requirements which, from the viewpoint of applicants and holders, are more favorable than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other than Article 6.	(3) [보다 유리한 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출원인과 권리자의 관점에서 본 조약 제6조 이외에 더 유리한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No Regulation of Substantive Industrial Design Law] Nothing in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is intended to be construed as prescribing anything that would limit the freedom of a Contracting Party to prescribe such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relating to industrial	(2) [No Regulation of Substantive Patent Law] Nothing in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is intended to be construed as prescribing anything that would limit the freedom of a Contracting Party to prescribe such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relating to patents as it	

DLT	PLT	STLT
designs as it desires.	desires.	
(2) [Relation to Other Treaties]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any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any other treaties.		
(3) [More Favorable Requirements]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provide for requirements which, from the viewpoint of applicants and holders, are more favorable than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other than Article 6.	(1) [More Favorable Requirements]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provide for requirements which, from the viewpoint of applicants and owners, are more favorable than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other than Article 5.	

나. 해설

- 제2조는“실체”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 PLT 제2조 제2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제2조는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본 조약이 다른 조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상호의무를 이탈시키지 못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he 절차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약법상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임
- 제2조 제3항은 `24년 11월 외교회의를 통하여 새롭게 포함된 구문으로서, 제6조 출원일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내법에서 출원인과 디자인권자에게 더 유리한 요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이는 PLT 제2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임

3. 제3조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Application Industrial Design to Which This Treaty Applies)

원문	번역
Article 3 Appl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is Treaty Applies	제3조 본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
(1) [Applications] This Treaty shall apply to national and regional applications which are filed with, or for,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1) [출원] 본 조약은 체약당사자의 행정청에 제출되는 국내 및 지역 출원에 적용된다.
(2) [Industrial Designs] This Treaty shall apply to industrial designs that can be registered as industrial designs, or for which patents can be granted, under the applicable law.	(2) [산업디자인] 본 조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으로서 등록될 수 있거나 특허가 허여될 수 있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 Appl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is Treaty Applies	Article 3 Application	Article 2 Mark to Which the Treaty Applies
(1) [Applications] This Treaty shall apply to national and regional applications which are filed with, or for,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a)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shall apply to national and regional applications for patents for invention and for patents of addition, which are filed with or for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ich are: (ii) divisional applications of the types of applications referred to in item (i), for patents for invention or for patents of addi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4G(1)	(2) [Kinds of Marks] (a) This Treaty shall apply to marks relating to goods (trademarks) or services (service marks) or both goods and services. (b)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collective marks, certification marks and guarantee marks.

DLT	PLT	STLT
	or (2) of the Paris Convention.	
(2) [Industrial Designs] This Treaty shall apply to industrial designs that can be registered as industrial designs, or for which patents can be granted, under the applicable law.	(2) [Patents]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shall apply to national and regional patents for invention, and to national and regional patents of addition, which have been granted with effect for a Contracting Party.	(1) [Nature of Marks] Any Contracting Party shall apply this Treaty to marks consisting of signs that can be registered as marks under its law.

나. 해설

- 제3조는“적용대상 국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 행정청 또는 지역 행정청에 의하여 국내출원 또는 지역출원으로 허용된 출원에 대하여 적용
- 출원인이 계약당사자의 국민이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 출원을 하게 될 경우, 이 조약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함
- 지역출원에 해당될 수 있는 정부간기구의 예로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 기구(OAPI),⁵⁾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 기구(ARIPO),⁶⁾ 베레루스 지식재산권 기구(BOIP),⁷⁾ 유라시아 특허기구(EAPO),⁸⁾ 유럽연합(EU)이 있음
- 계약당사자는 “전환”, “수정” 또는 “계속”신청과 같이 자국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출원에 대하여 이 조약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음⁹⁾
- 제2항 및 이 조약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조약은 산업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거나 디자인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산업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항이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각 계약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¹⁰⁾

5) OAPI의 방기협정 계약 당사국의 디자인을 등록한다.

6) ARIPO의 하라레 의정서의 계약당사자의 디자인을 등록한다.

7) BOIP는 베레루스 3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효력을 갖는 디자인을 등록한다.

8) EAPO는 유라시아 특허협약 당사국에서 효력을 갖는 디자인을 등록한다.

9) DLT note 2.04.

10) DLT note 2.03.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제정된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 조약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¹¹⁾

4. 제4조 출원(Application)

원문	번역
Article 4 Application	제4조 출원
(1) [Contents of Application; Fe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tion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1) [출원서 내용, 수수료] (a) 계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과 같은 기재 사항이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 a request for registration;	(i) 등록 신청
(i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i) 출원인 성명 및 주소
(iii) where the applicant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iii)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iv) where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required under Article 5(3), such address;	(iv) 제5조 제3항에 따른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그 주소
(v) a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v)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업디자인의 도면
(vi) an indication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incorpora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v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 및 물품들의 명칭
(vi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take advantage of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a declaration claiming the priority of that earlier application, together with indications and evidence in support of the declaration that may be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vii) 출원인이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 취지 및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되는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vii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take advantage of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evidence that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incorporate the industrial	(viii) 출원인이 파리협약 11조 ¹²⁾ 를 주장하는 경우,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시회에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들이 공개되었다는 증

11) DLT note 2.06.

원문	번역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have been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거서류
(ix) any further indication or elemen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x) 시행규칙에서 정한 추가 기재사항 또는 요건
(b)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the payment of a fee may be required.	(b) 출원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Indication of Informat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an application contain an indication of any pri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of other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which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s relevant to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2) [정보표시] 계약당사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전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표현물 및 전통지식 등 출원인이 알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등록 적격성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을 출원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indication or element,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n Article 10, may be requir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3) [기타 요건의 금지] 출원 관련하여, 동조 제 1항 및 제10조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은 요구할 수 없다.
(4) [Several Industrial Designs in the Same Applica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under the applicable law, an application may include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4) [복수디자인 출원]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5)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or element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5) [증거] 계약당사자는 출원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이 출원서에 포함된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4 Application	Article 6 Application	Article 3 Application
(1) [Contents of Application; Fe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tion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2) [Request Form]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contents of an applic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contents of the request of ~	(1) [Indications or Elements Contained in or Accompanying an Application; Fee] (a)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tion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i) a request for registration;		(i) a request for registration;
(i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ii) where the applicant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v) where the applicant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iv) where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required under Article 5(3), such address;		(vi) where an address for service is required under Article 4(2)(b), such address;
(vi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take advantage of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a declaration		(vi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take advantage of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a declaration

1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1조 발명,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 특정 국제 박람회에
서의 잠정적 보호

1. 동맹국은 동맹국의 영역내에서 개최되는 어느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 출품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따라 가보호를 부여한다.
2. 그러한 가보호는 제4조에서 정한 우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에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 동맹국의 당국은 그 상품을 박람회에 반입한 날로부터 우선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각 동맹국은 해당 상품이 전시된 사실 및 반입의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DLT	PLT	STLT
claiming the priority of that earlier application, together with indications and evidence in support of the declaration that may be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claiming the priority of that earlier application, together with indications and evidence in support of the declaration of priority that may be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2) [Indication of Informat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an application contain an indication of any pri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of other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which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s relevant to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3)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indication or element,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n Article 10, may be requir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y not be requir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DLT	PLT	STLT
		throughout its pendency:
(4) [Several Industrial Designs in the Same Applica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under the applicable law, an application may include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5)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or element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6)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in respect of any matt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or in a declaration of priority, or any tran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or (5), be filed with its Office in the course of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only where that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that matter or the accuracy of that translation.	(5) [Evidenc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or element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나. 해설

- 제4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으로 하여금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한 서식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서의 최대 내용(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시 및 요소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 제4조 제3항에서는 조약 제10조(communication)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신청서에 추가적인 요소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폐쇄적인 신청요소의 목록을 설정하는 것은 산업디자인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절차의 간소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¹³⁾
- 이 조항은 신청서의 획일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 내용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선택에 따라 조약에서 나열된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음¹⁴⁾

표 5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제1항 (i) 등록신청 : 계약당사자 행정청이 정한 공식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¹⁵⁾ • 제4조 제1항 (ii)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계약당사자는 이름과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반드시 집주소가 아닌 서신을 위한 주소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¹⁶⁾ • 제4조 제1항 (v) - 도면 : 산업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추가 요건을 수정하고 채택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¹⁷⁾ • 제4조 제1항 (vi) - 물품 및 물품의 명칭 : 계약당사자는 물품 및 물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는 물품의 표시를 출원신청서의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기타 특정한 형식에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¹⁸⁾ |
|---|

- 본 조문은 출원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성격의 요소, 즉 사실상 모

13) DLT note 3.01.

14) 예컨대, 디자인 청구항을 출원 시에 반드시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에 따른 보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등록 시스템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LT note 3.02.

15) DLT note 3.04.

16) DLT note 3.05.

17) DLT note 3.06.

18) DLT note 3.07.

든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하거나 선택적인 성격의 요소는 시행규칙(Regulation)으로 이전되어 있음¹⁹⁾

- 제4조 제1항 (b)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출원 관련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급대상(ex. 행정청, 다른 기관 또는 은행)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음. 또한 수수료의 지불방법에 대하여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각 계약당사자는 전자적 거래를 통한 지불 등 그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당사자는 수수료의 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을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²⁰⁾
- 한편, 디자인법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일명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정보표시(Indication of Information)’라는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제4조 제2항에 반영되었음. 동 조 제2항은 출원인이 알고 있는 등록 적격성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을 출원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정보로서 이전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사항, 전통문화표현물 및 전통지식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제4조 제4항에 따라 한명의 출원인이 2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 즉 “복수출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사용자 관점에서 복수출원은 출원 간소화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이 존재하고 있음(단, 행정청/심사관의 관점에서는 복수출원의 경우 신규성의 심사나 검색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될 수 있음) 계약당사자가 “복수출원”을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동 조약의 조항은 복수출원이 허용되는 조건을 규정하진 아니함²¹⁾²²⁾

다. 관련 국내법

표 6 조약 제4조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3] 디자인등록출원서

19) DLT note 3.03.

20) DLT note 3.09.

21) 따라서, 예를 들어 각 계약당사자는 모든 디자인이 로카르노 분류의 동일한 류에 속하는 제품에 적용되거나 그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에만 복수출원을 허용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DLT note 3. 11.참조

22) DLT note 3.10./3.11.

표 7 DLT 조약의 기재요소와 국내법 비교

DLT 조약	국내법	기타
등록신청	디자인등록출원서 (법§37①)	
출원인 성명 및 주소	법 §37① 1호	
(해당 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법 §37① 2호	
제4조3항에 따른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	규칙 §24 ① 15호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 없이 국내에 체제하지 않은 채로 디자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력의 대상이 됨
산업디자인의 도면	법 §35 ② 규칙 §35 ① 1호	도면 또는 사진
물품, 물품의 명칭	법 §37② 1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기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규칙 §35 ① 9호	
신규성 상실의 예외	법 §37⑤ 1호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밖의 사항】란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기재
물품이 속한 로카르노 분류	법 §37② 1호	물품류 기재
청구항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조약 제4조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약에서 나열된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음, 즉 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출원 시의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우리법의 경우 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조항으로 인한 국내법의 시급한 개정 수요는 없음
- 다만, 제4조 제2항의 ‘정보표시’의 경우 ① 해외출원 시 해당 국가의 출원서의 기재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국내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 국내법에서 정보표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논의되던 전통지식과 전통문화문화표현물의 출처표시 대비, ‘정보 표시’라는 용어로서 다소 완화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토대로 디자인 출원 시의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출처공개를 출원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음
- 관련하여 2024년 5월 열린 유전자원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할 경우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지,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출처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짐

표 8 (참고) Diplomatic Conference on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2024. 5. 13- 5. 24. Geneva) 주요내용

-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할 경우,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지 및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의 출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에 의도가 있을 경우, 각 계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국내 대응) 우리나라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공조하며 대응, 출처공개 의무의 경우 특허시스템의 기본원칙과 효용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 특히 WIPO에서 논의되는 출처공개 제도는 특허시스템의 투명성의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
- (경과)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 하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 현재 중국, EU, 브라질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의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표 9 국외 디자인 출원 절차에서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출처공개 관련 규정

- 일부 국가에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디자인 출원 시에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사례가 매우 희박함, 유전자원 관련 출처공개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도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필리핀) 필리핀 「지식재산법」 제114조의 출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등록 출원서에는 “(e)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등록에 대한 권리의 출처를 나타내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
- (중국) 발명특허에 대하여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의무로 두고 있으나, 디자인 특허에 대한

여는 관련 규정 없음²³⁾

- (인도) 특허출원 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와 지리적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나,²⁴⁾ 디자인 법 및 규칙에서는 관련 규정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24. 5. WIPO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표시와 관련하여 취했던 기본 입장을 고려하되, 디자인출원에 대한 국내외 통계자료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내법의 개정 수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23) 중국 전리법 제26조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의 출원서류), 제27조 (디자인특허의 출원서류)

24) 인도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5. 제5조 대리인 ;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Address for Correspondence)

원문	번역
Article 5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제5조 대리인;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
(1) [Representatives Admitted to Practic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1) [절차수행 대리인] (a)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대리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i) have the right, under the applicable law,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 출원 및 특허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관련 법에 따라 가질 것;
(ii) provide, as its address, an address i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ii)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규정된 영토 내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제공할 것
(b) An act, with respect to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by or in relation to a representative wh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effect of an act by or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appointed that representative.	(b) 모든 행정청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a) 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을 준수한 대리인에 의한 행위나 그 대리인과 관련한 행위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2) [Mandatory Representation]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appoint a representative.	(2) [강제대리] (a) 제(b)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대리인이 임명된 지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절차 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b)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ay act himself/her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iling of an	(b) 계약당사자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의 단순 납부를 행정청에 직접 할 수 있다.

원문	번역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and for the mere payment of a fee.	
(3)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require re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shall have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3) [송달 또는 교신용 주소]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대리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목적으로, 계약당사자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be filed with the Office in a manne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4) [대리인 선임] 계약당사자는 대리인의 선임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행정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matters dealt with in those paragraphs.	(5) [기타 요건의 금지] 제10조의 요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루는 사항들의 준수를 위하여 어느 계약당사자도 이들 항에서 언급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6) [Notification]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4) is or are not complied with,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giving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any such requirement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6) [통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 가운데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된 요건의 하나 이상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7)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7) [요건 미준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

원문	번역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4) is or are not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Contracting Party may apply such sanction as is provided for in its law.	가운데 계약당사자가 적용한 하나 이상의 요건이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국내법에서 규정된 바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5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Article 7 Representation	Article 4 Representation; Address for Service
(1) [Representatives Admitted to Practic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1) [Representatives]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1) [Representatives Admitted to Practice] (a)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 have the right, under the applicable law,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 have the right, under the applicable law,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 have the right, under the applicable law,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and, where applicable, be admitted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i) provide, as its address, an address i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ii) provide, as his address, an address o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ii) provide, as its address, an address o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b) An act, with respect to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by or in relation to a representative wh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b) Subject to subparagraph (c), an act, with respect to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by or in relation to a representative who complies	(b) An act, with respect to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by or in relation to a representative wh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DLT	PLT	STLT
establish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effect of an act by or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appointed that representative.	with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effect of an act by or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appointed that representative.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effect of an act by or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appointed that representative.
(2) [Mandatory Representation]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appoint a representative.	(2) [Mandatory Representation]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ppoint a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except that an assignee of an application,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may act him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ollowing procedures:	(2) [Mandatory Representation; Address for Service] (a)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be represented by a representative.
(b)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ay act himself/her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and for the mere payment of a fee.	(i)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ii) the mere payment of a fee; (iii) any other procedure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DLT	PLT	STLT
(3)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require re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shall have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b) Any Contracting Party ma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require re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have an address for service on that territory.
(4)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be filed with the Office in a manne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the appointment of the representative be filed with the Office in a manne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mal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3) and (4)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DLT	PLT	STLT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matters dealt with in those paragraphs.	the matters dealt with in those paragraphs,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matters dealt with in those paragraphs.
(6) [Notification]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4) is or are not complied with,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giving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any such requirement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Notification]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3) are not complied with,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ssignee of the applicatio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giving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any such requirement, and to make observations,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7)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4) is or are not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Contracting Party may apply such sanction as is provided for in its law.	(6)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to (3) are not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Contracting Party may apply such sanction as is provided for in its law.	

나. 해설

- 제5조는 대리인과 주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PLT 제7조 및 STLT 제4조의 상당 부분을 참고²⁵⁾
- (대리인의 선임) 제5조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리인에게 적용되며, 대리인 선임 자체와 선임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해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함. 해임 등 본 조약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안은 계약당사자의 법률을 적용²⁶⁾²⁷⁾
- (대리인의 요건)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해당 조항은 계약당사자에서 완화된(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함.²⁸⁾ 또한 그러한 대리인의 주소지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²⁹⁾
- (이해관계인의 의미) 제5조 1항 b호에서 이해관계인을 언급하는 것은, 출원 또는 등록을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출원 또는 등록의 양도로 인해 새로운 디자인권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³⁰⁾
- (강제대리) 제5조 2항은 a호와 b호로 구성됨. a호는 ❶ 출원일을 얻기 위한 목적과 ❷ 단순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출원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서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함을 규정하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단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을 필요로 함. 해당 규정은 STLT 제4조 제2항 (a)호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³¹⁾ PLT 제7조 제2항 a호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 제2항 b호는 PLT 제7조 제2항을 모델로 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받는 데에 있어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제5조 2항 a호에서 명시된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❶ 출원인이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

25) DLT note 4.01.

26) 예컨대 계약당사자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대리인의 선임을 종료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허용할 수도 있다.

27) DLT note 4.02.

28) DLT note 4.03.

29) DLT note 4.04.

30) DLT note 4.05.

31) DLT note 4.06.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즉, 조약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원일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출원일이 인정됨. 단, 계약당사자는 출원과 관련하여 후속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출원일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기한 내에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해당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자국의 법률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³²⁾

② 출원인이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단순한 수수료 지불을 위해서는 대리인 없이 행정청에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단순한 수수료 납부”라는 표현에서 계약당사자가 해당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기타 행위(조사 또는 심사 요청)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든 계약 당사국은 무엇이 “단순한” 수수료 납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음³³⁾

- 참고로 제5조 제2항 제b호에 따라,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나, 이에 대하여 제31조에서 유보할 수 있음을 규정
- (송달 또는 교신용 주소)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이 자국의 영토 내에 거소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대신 출원인에게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로의 인정 여부는 해당 계약 당사국의 법률에 따르며, 이 요건은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간주됨³⁴⁾³⁵⁾
- (다른 요건의 금지) 제5조 제1항~제4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한적 열거 사항이며, 이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 (통지) 제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이 때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출원인, 권리자,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보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주소가 계약당사자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보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32) DLT note 4.07.

33) DLT note 4.08. 4.09.

34) DLT note 4.10.

35) STLT Note 4.05 에 따르면, 일부 국가의 법률은 출원인 또는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는 “당사자와 서신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영토에 서비스를 위한 주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위임자의 성명 및 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위임사항, 위임일자, 위임자의 서명 기재

제5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는 제출인(성명, 사건과의 관계) 및 대리인의 성명과 번호, 사건의 표시, 신고대상 대리인의 성명과 번호, 서명 기재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2(부적합한 출원서류의 소명기간)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출원서류 등의 반력에 따른 소명서 제출 지정기간은 1개월로 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6조는 특허법상 관련 조문을 준용해오다,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내에 신설함.
- 재외자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디자인관리인은 재외자에 의해 위임된 자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을 의미함. 디자인보호법 제6조에서 재외자에게 디자인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 수행에 있어서 특허청의 절차 진행 지연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임. 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리인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함. 즉 재외자의 경우는 절차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음. 단,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접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³⁶⁾

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디자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2023, 1001면.

-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자로서 재외자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을 말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절차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

표 10 재외자에 관한 참고 판례(특허법 제5조의 해석)

[참고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
 [2]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재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허법 제5조 제1항,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특허청장은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허관리인제도는 특허청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직접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번잡과 절차지연을 피함으로써 원활한 절차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는 점,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 특허법 제62조, 제133조 제1항에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밟은 경우에 이를 특허거절사유나 특허무효사유로는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동 조 제5조 제2항 제b호의 경우는 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만을 기준으로 할 때 ① 조약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고 가입하는 방안, ② 제5조 제2항 제5호를 제외(유보)하고 가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국내법의 개선에 대하여는 검토 필요성이 있음
- (취지) 동 조문은 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재외자의 경우라도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❶ 출원일 확보 목적의 출원, ❷ 단순한 수수료의 납부)를 규정함. 사무국은 전자출원이 표준이 되고 있으며, 현대의 통신기술이나 출원방식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외국 출원인, 권리자 또는 행정청에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이해당사자가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해당 예외조항에 의하여 도전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³⁷⁾

37) SCT/3/10. 331-332. 추가로 브라질 대표단은 회원국들이 해당 조항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 내국인의 디자인 해외출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동 제도의 도입 시 국내 출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³⁸⁾ 하지만 반대로 국외 출원인에 의하여 우리 청으로 들어오는 출원 건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해당 내용은 단지 산업디자인법의 개정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전반에서 통일성 있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따라서 조약 제5조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법제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 규칙의 개정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표 11 조약 제4조 관련 국내법 개정 시 고려사항

- (국내 대리인의 반발 가능성) 강제대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국내 대리인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출원일 확보가 아닌 그 이후의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필요
- (교신용 주소 제출 규정 필요 여부) 조약에서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자국의 영토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국내법상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동일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별도의 교신용 주소의 제출 규정 불요한 것으로 해석(전자출원으로 대부분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류지/현재지/거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 (단순한 수수료 납부) 단순한 수수료 납부를 계약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원인들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한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 고려

의미에 대한 설명을 특별세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38) 미국 대표단은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디자이너에게 이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이 출원을 하고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무국의 설명에 따르면, 대리인을 찾고 선택할 필요없이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다고 보았다. 공개 또는 시장에 접근하는 경쟁자 때문이든, 출원인이 대리인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일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우려를 제기한 많은 국가들이 헤이그 협정의 회원국인데, 제네바법에 따라 각 국가의 대리인을 식별할 필요없이 출원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헤이그 시스템에서의 간소화 특징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6. 제6조 출원일 (Filing Date)

원문	번역
Article 6 Filing Date	제6조 출원일
(1) [Permitted Requirements]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s the following indications and elements,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1) [허용요건] (a) 제(b)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기재사항 및 요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행정청에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i)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lements are intended to be an application;	(i) 당해 사항들이 출원을 의도한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재
(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ii)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
(iii) a 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ii) 산업디자인의 충분히 명확한 도면
(iv) indications allowing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if any, to be contacted;	(iv)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기재
(b) A Contracting Party may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s, together with a 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nd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or allowing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if any, to be contacted, some only, rather than all, of the other indications and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receives them in a language other tha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b) 계약당사자는 산업 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과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있는 경우)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포함하여, (a)항에서 언급된 기타 표시와 요소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또는 이를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한 경우에도, 관청이 이를 접수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다.
(2) [Permitted Additional Requirements] (a) A Contracting Party whose law, at the time it becomes party to this Treaty, requires that an application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subparagraph (b)	(2) [허용되는 추가 요건] (a) 계약당사자의 조약 가입 당시 법률에 따라 출원일 부여를 위해 제 (b)호에서 명시된 요건들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선언을 통해 해당 요건들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원문	번역
in order for that application to be accorded a filing date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ose requirements.	
(b) The requirements that may be notifi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are the following:	(b) 제(a)호에 따라 통지될 수 있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i) an indication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incorpora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들)의 명칭
(ii)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industrial design;	(ii)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징 또는 간략한 설명
(iii) a claim;	(iii) 청구항
(iv) the payment of the required fees.	(iv)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v)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v) 산업디자인의 창작자에 관한 표시
(c) Any declaration notified under subparagraph (a)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c) 제(a)호에 따라 통지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3)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indication or element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a) and (2)(b) may be required for the purpose of according a filing date to an application.	(3) [기타 요건의 금지] 제(1)항 제(a)호 및 제(2)항 제(b)호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기재 사항이나 요건도 출원일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4) [Notification and Time Limits] Where the application does not, at the time of its receipt by the Office, comply with one or more of the applicabl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b),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give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4) [통지 및 기한] 행정청이 출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출원이 제(1)항 제(a)호 및 제(2)항제(b)호에 따른 요건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Filing Date in Case of Subsequent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f, within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e applicant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5) [추후 요건 보정시의 출원일] 만약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출원인이 해당 요건들을 준수한 경우, 출원일은 늦어도 제(1)항 및 제(2)항제(b)호에 따라 체약국이 요구

원문	번역
requirements, the filing date shall be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all the indications and elements requir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b) are received by the Office. Otherwise, the application shall be treated as if it had not been filed.	한 모든 기재사항 및 요건들이 행정청에 접수된 날이 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6 Filing Date	Article 5 Filing Date	Article 5 Filing Date
(1) [Permitted Requirements]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s the following indications and elements,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1) [Elements of Application] (a)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subject to paragraphs (2) to (8),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shall be the date on which its Office has received all of the following elements, filed,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on paper or as otherwise permitted by the Office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1) [Permitted Requirements]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d the following indications and elements in the language required under Article 8(2):
(i)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lements are intended to be an application;	(i)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lements are intended to be an application;	(i)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hat the registration of a mark is sought;
(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or allowing the applicant to be contacted by the Office;	(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DLT	PLT	STLT
(iii) a 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ii) a part which on the face of it appears to be a description.	(iv) a 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mark whose registration is sought;
(b) A Contracting Party may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s, together with a 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nd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or allowing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if any, to be contacted, some only, rather than all, of the other indications and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receives them in a language other tha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b) A Contracting Party may,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accept a drawing as the el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i).	(b) Any Contracting Party may accord as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d only some, rather than all, of the indications and el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received them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language required under Article 8(2).
(4) [Notification and Time Limits] Where the application does not, at the time of its receipt by the Office, comply with one or more of the applicabl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b),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give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within	(3) [Notification] Where the application does not comply with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Offic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notify the applicant, giving the opportunity to comply with any such requirement, and to make observations, within	(3) [Corrections and Time Limits] The modalities of, and time limits for, corre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fixed in the Regulations.

DLT	PLT	STLT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Filing Date in Case of Subsequent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f, within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e applicant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the filing date shall be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all the indications and elements requir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b) are received by the Office. Otherwise, the application shall be treated as if it had not been filed.	(4) [Subsequent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a) Where one or more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not complied with in the application as initially filed, the filing date shall, subject to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6), be the date on which all of the requirement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subsequently complied with.	

나. 해설

- 제6조는 출원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a)호는 출원인의 인정을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출원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일 인정 요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음. 출원일 인정 요건은 행정청이 “누가”, “무엇을” 출원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음³⁹⁾
- 계약당사자 자국의 법에서 제6조 제1항 a호, (i)에서 말하는 “당해 사항이 출원을 의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표시”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⁴⁰⁾
- 제6조 제1항에서 출원일의 인정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출원일 인정 요건들이 행

39) Note on Article 5.01.

40) Note on Article 5.02.

정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누가”, “무엇을”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임⁴¹⁾

- 제6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동조 동항 a호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요건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때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이 필요함을 규정함. 즉 산업디자인의 도면은 항상 출원일 인정의 요건이어야 함⁴²⁾
- SCT/S3 특별회의에서 EU 대표단은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과 함께,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항상 출원일 인정 요건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은 최종조약으로 반영되었음.⁴³⁾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상황에서 출원일의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표 12 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출원일 인정을 위한 허용 요건

요건 ①	요건 ②	요건 ③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	②-1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②-2 출원인 또는 대리인(있는 경우)의 연락처 표시	③-1 제(a)호의 각 목의 일부 제출 또는 ③-2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 외 타 언어
요건 ① (필수) + 요건 ② 중 하나 또는 모두 충족 + 요건 ③ 중 하나 또는 모두 충족 = 출원일 인정		

- 제6조 제2항은 제29차 SCT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존재하고, 선언을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통지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추가적인 출원일 인정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됨을 규정함. 또한 제2항 c호에 따라 통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 철회의 효과로 계약당사자는 출원일 인정에 관하여 제6조 제1항 a호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요건만을 요구할 수 있음⁴⁴⁾
- 제6조 제3항은 제1항 a호 및 제2항 b호에 규정된 목록이 출원일 인정 요건의 최대 목록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출원서에 다른 기재사항이나 요건이 필요할 수 있지만

41) Note on Article 5.04.

42) Note on Article 5.05.

43) Note on Article 5.06.

44) Note on Article 5.07.

이는 출원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음⁴⁵⁾

- 제6조 제4항은 출원서에 출원일은 인정방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재사항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을 허여하여야 함을 규정, 해당 기한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변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⁴⁶⁾
- 제6조 제5항은 출원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출원일 인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한 경우의 실제 출원일로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출원일은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모든 기재사항 및 항목이 행정청에 제출된 날임. 즉 출원일은 모든 출원일에 관한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로 늦춰져야 함. 그러나 주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모든 기재사항 및 항목이 행정청에 접수된 날짜보다 “늦지 않은” 날짜로 할 것이 반영됨⁴⁷⁾

다. 관련 국내법

표 13 조약 제6조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

45) Note on Article 5.08.

46) Note on Article 5.09.

47) Note on Article 5.09.

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38조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서의 보완제도로써 2013년 개정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것이며, 이전에는 출원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출원서류를 반려하여,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한 것임. 또한 PLT와 STLT 및 헤이그협정 등의 국제조약에서도 중대한 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는 날을 출원일로 인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신설이 요구되었던 것임⁴⁸⁾
- 이에 디자인보호법 제38조는 출원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출원일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규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 도달한 날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음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④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함
- (절차보완서)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서를 제출하여야 함. 절차보완서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 보완제도의 신설과 함께 만들어진 서류로, 출원일의

48)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137면.

인정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여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면 그 보완서가 도달한 날로 출원일이 인정될 수 있음⁴⁹⁾

- (복수디자인의 경우) 복수디자인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복수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디자인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날에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인정하며, 일부디자인의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일부디자인만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그 일부디자인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보완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으로 봄
- 또한 출원료 납부와 관련하여, 이는 출원일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제47조의 규정사항으로서 별도 선언을 통한 통지는 불필요함

49) 이러한 보완은 보정의 경우 최초의 출원이 그대로 승계되고 출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의 시점 등이 최초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장되는 효과와는 다르며,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7. 제7조 공지예외기간 (Grace Period for Filing in Case of Disclosure)

원문	번역
Article 7 Grace Period for Filing in Case of Disclosure	제7조 공지예외 기간
A disclosure of the industrial design during a period of six or 12 months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if priority is claimed, the date of priority,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novelty and/or originality, as the case may be, individual character or non-obviousness, of the industrial design, where the disclosure was made: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12개월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어도, 해당 공개가 산업디자인의 신규성 그리고/또는 독창성, 개별적 성격 또는 진보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i) by the creator or his/her successor in title; or	(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
(ii) by a person who obtained the disclose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ial design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as a result of an abuse, from the creator or his/her successor in title.	(i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공개된 정보를 취득한 자 (이 경우 권한없이 누설된 정보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7조는 공지예외에 관한 사항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자, 그의 승계인 또는 타인에 의한 공개에 대하여 공지예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리고 예외 기간을 규정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⁵⁰⁾

⁵⁰⁾ Note on Article 6.01.

- 국가마다 서로 다른 예외기간이 존재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 예외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해외에서 산업디자인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따라서 상호 합의된 예외 기간이 존재할 경우, 출원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의 의의가 있음⁵¹⁾
-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SCT 제27차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6개월 또는 12개월의 예외기간에 합의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두 기간 중에선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음.⁵²⁾ 또한 SCT 제29차 회의에서는 공개유형을 2개(❶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 의한 공개, ❷ 창작자 또는 승계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에 의한 공개(악의적 공개 포함)로 수정하였음. 이 때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권한없이 누설된 정보라⁵³⁾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함⁵⁴⁾
- 국내 또는 외국 행정청에 발행한 공보에 산업디자인을 공개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각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른 문제이나, 공보에 의한 공개는 조약에서 명시한 공개 유형의 어떠한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예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음⁵⁵⁾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신규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진정한 창작자인 출원인에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 이에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51) Note on Article 6.01.

52) Note on Article 6.02.

53) 이때 권한 없이 누설된 정보공개의 예로 “기밀 유지 조건 하에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자가 창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승인없이 공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54) Note on Article 6.03.

55) Note on Article 6.04.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함

- 신규성 상실의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 6개월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법개정을 통하여,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함⁵⁶⁾

라.쟁점 및 후속조치

- (용어)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조약에서는 “공지예외기간”(Grace Period for Filing in Case of Disclosure)”이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 및 효과는 동일함
- (주체적 요건) DLT는 ‘창작자·승계인 또는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법은 공개 주체를 열거하지 않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심사기준에서도 승계인 및 제3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어 조약과 일치함
- (객체적 요건) DLT는 디자인 공개의 유형에 대해 정함이 없으나, 우리 법은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제36조제1항 단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조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법제36조 제1항 단서의 취지(재출원으로 인한 부당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방지)를 고려하여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시기적 요건)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DLT는 우선일(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기산하나, 우리 법은 국내 출원일(제2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를 기산하기 때문에 조약과의 불일치가 존재함. 이에 디자인 분야 국제적 추세 및 우선권 주장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우선일로부터 기산)이 필요할 것이나 해당 조항의 경우 특허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야 함
- 한편 조약의 경우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을 인정하나, 국내 심사에서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외 출원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이에 국내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함

56) 또한 2023년 법개정을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규정을 삭제함

8. 제8조 창작자 명의 출원 (Requir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or)

원문	번역
Article 8 Requir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or	제8조 창작자 명의 출원
(1) [Requirement That the Application Be Filed in the Name of the Creato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tion be filed in the name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1) [창작자 명의의 출원 요구]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창작자 명의로 출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Formality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or]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at the application be filed in the name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such requirement shall be satisfied if the name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is indicated, as such, in the application, and:	(2) [창작자 명의로 출원 시 형식] 계약당사자가 산업디자인을 창작자 명의로 출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출원서에 창작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된 것이다.
(i) that name corresponds to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i) 창작자의 성명이 출원인과 일치할 것, 또는
(ii) the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or contains, a statement of assignment from the creator to the applicant, signed by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ii) 출원 시 창작자에 의해 서명된 양도증서를 함께 제출할 것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8조는 창작자 명의 출원에 관한 사항임. 일부의 관할권에서는 창작자 명의로 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즉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양도 증서 또는 출원인에게 해당 디자인을 양도했다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도록 함⁵⁷⁾

- 이 조항은 출원서가 창작자 명의로 제출되어야 함을 일반요건으로 하지 않음.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 해당 요건이 있는 계약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 해당 요건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양도의 증거로 양도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출원 시 별도의 양도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증서에는 창작자의 직접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⁵⁸⁾

다. 관련 국내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창작자 및 그 승계인이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달리 말하면 창작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 (승계인의 해석)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며(제54조 제1항),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가 가능함. 승계인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창작자로부터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의미. 승계인은 상속·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권리를 승계 받는 일반승계인과 개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 받는 특정승계인이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승계인이 될 수 있음⁵⁹⁾
- 우리법은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계인이 직접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57) Note on Article 7.01.

58) Note on Article 7.02.

59)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986면.

9. 제9조 하나 이상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Amendment or Division of Application Including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원문	번역
Article 9 Amendment or Division of Application Including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제9조 하나 이상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1) [Amendment or Division of Application] If an application that include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hereinafter “initial applic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the Office may require the applicant,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to either:	(1)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이하 ‘최초출원’)이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i) amend the initial application to comply with those conditions; or	(i)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최초 출원을 보정할 것
(ii) divide the initial application into two or more divisional applications that comply with those conditions by distributing among the latter the industrial designs for which protection was claimed in the initial application.	(ii) 최초 출원을 분할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이 준수되는 경우, 최초 출원을 2이상의 분할출원으로 분할할 것
(2) [Filing Date and Right of Priority of Divisional Applications] Divisional applications shall preserve the filing date of the initial application and the benefit of the claim of priority, if applicable.	(2) [분할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권] 분할출원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
(3)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the applicant may also, on their own initiative, divide an application into two or more divisional applications.	(3)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출원서를 두 개 이상 의 분할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Fees] The division of an application may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fees.	(4) [수수료] 분할출원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9조는 하나 이상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항은 조약 제4조 제4항과 관련되어 있음
- 조약 제4조 제4항에서는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2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이 조약 제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당사자(특허청)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하는 등 출원을 보정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분할출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분할은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만 가능함⁶⁰⁾
- 본 조항의 목적은 출원인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출원(최초 출원)을 제출하면서, 일부 산업디자인이 계약당사자가 규정한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보정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⁶¹⁾
- 동 조항과 관련하여 출원인은 분할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 절차를 통하여 최초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 날짜를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분할출원으로 하여금 출원인이 최초 출원에서 야기한 실수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청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⁶²⁾
-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의 의미는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보정 또는 분할이 행정청이 요구하는 것임을 명확히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자체적으로 출원서를 보정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계약당사자는 원하는 경우 자국의 법률에서 보정 또는 분할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⁶³⁾

60) Note on Article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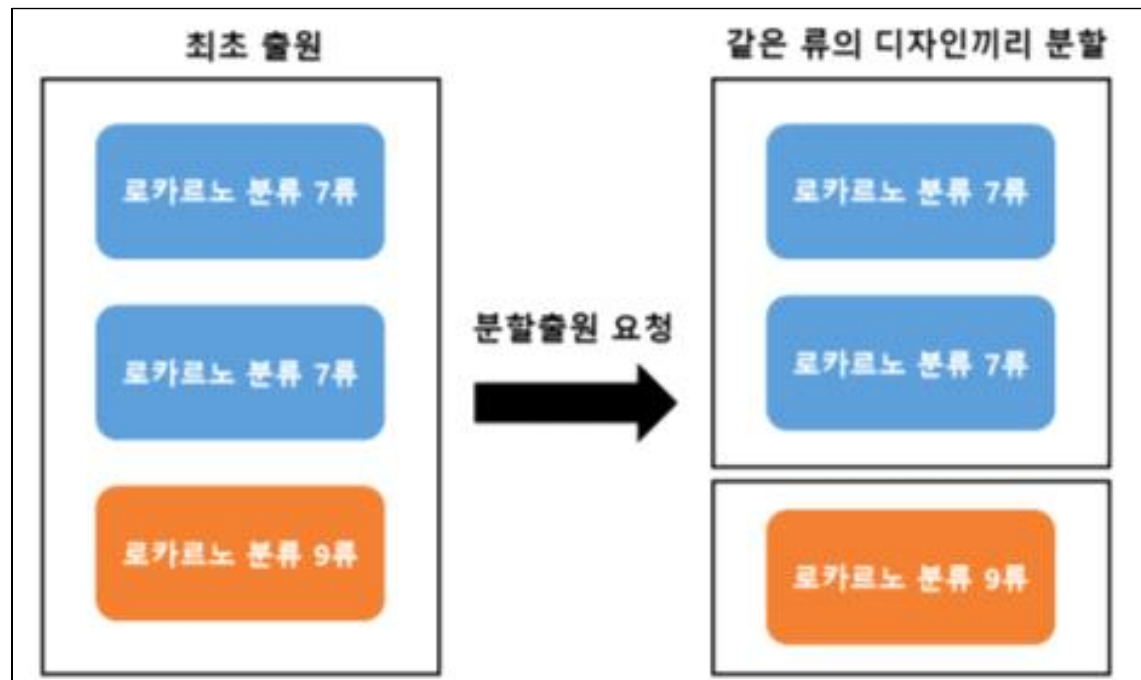
61) Note on Article 8.02.

62) Note on Article 8.02.

63) Note on Article 8.04.

-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라는 문구는 행정청이 최초 출원에 대해 “하자의 치유”를 우히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과 분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출원인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⁶⁴⁾
-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최초 출원”과 “분할출원”의 정의는 제1조가 아니라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STLT의 방식을 따른 것임⁶⁵⁾
- 제9조 제1항 (ii)에서 “최초 출원을 분할함으로써”라는 것은 다음의 예시를 참조할 수 있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최초 출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의 모든 산업디자인이 국제 분류에 따라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경우 복수 출원이 인정된다고 가정함. 이 때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최초출원을 7류에 속하는 두 개의 산업디자인과 9류에 속하는 하나의 산업디자인으로 나누어 분할출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⁶⁶⁾

그림 1 제9조 제(1)항 (ii)의 예시



- 제9조 제1항 (ii)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이란 조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 계약당사자가 규정한 요건을 의미함. 즉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의미함⁶⁷⁾

64) Note on Article 8.05.

65) Note on Article 8.06.

66) Note on Article 8.07.

67) Note on Article 8.08.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

- (원칙) 우리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절차적 편의를 제공
- (효과)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아니함

10.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원문	번역
Article 10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제10조 산업디자인 공개
(1) [Maintaining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A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he industrial design to be maintained unpublished for a period fixed by its applicable law, subject to the minimum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1)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계약당사자는 시행 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간에 대해 관련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비공개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Request to Maintain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Fee]	(2)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 및 수수료]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under paragraph (1), the applicant make a request to the Office.	(a)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In respect of a request for maintaining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under subparagraph (a), the Office may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b) 제(a)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Request to Publish Further to a Request to Maintain Unpublished] Where a request to maintain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2)(a), the applicant or holder, as the case may be, ma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applicable under paragraph (1), request the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3) [비공개 유지 신청건에 대한 공개 신청] 제(2)항 제(a)호에 따라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를 한 경우,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언제든지 산업디자인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최소 기간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함. 이 조항은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의 최초 출시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그러나 산업디자인이 특정 관할권에서 비공개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할권에서 공개되어 버린다면,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것임. 따라서, 본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간의 비공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비공개 이상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재량으로 함⁶⁸⁾
- 이 때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공개 최소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Regulation 제6조)
- 산업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특정한 제도를 규정하진 않음. 따라서 계약 당사국은 등록 또는 권리 허여 이후 공개유예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또는 효과적으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하며, 출원료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보호 허여를 지연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있음⁶⁹⁾
- 제10조 제1항을 포함하여 제9조의 일반적인 구조는 산업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계약당사자의 다양한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제1항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산업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 출원인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을 규정함⁷⁰⁾
- 제10조 제2항은 계약당사자에게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러한 신청은 비밀디자인제도 또는 공개연기 시스템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⁷¹⁾
- 제10조 제3항은 신청인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해당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업디자인이 공개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간보다 짧을 수

68) Note on Article 9.01-9.02

69) Note on Article 9.03

70) Note on Article 9.04

71) Note on Article 9.05

없음⁷²⁾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공개가 계약당사자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어떠한 행정청도 산업디자인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함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선출원)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72) Note on Article 9.06

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취지) 비밀디자인 제도는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상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출원디자인(권)을 비밀로 유지하여 타인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며, 디자인의 경영전략상 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
- (기간)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지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청구의 효과) 비밀디자인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될 경우라도 등록공보에는 서지사항⁷³⁾만이 게재

라.쟁점 및 후속과제

-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출원인 등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디자인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단축(제2항) 또는 철회(제6항)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약과의 충돌은 없음
- 그런데, 같은 날 2 이상의 비밀디자인출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때 제46조(선출원) 조항과의 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함. 비밀디자인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2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어떤 것을 등록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하여 거절결정 확정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법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공보에 게재하여야 함. 그러나 제56조에서는 공개 시기(즉시 또는 비밀기간 경과 후 공개 여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때 비밀디자인에 대한 공보 공개가‘즉시’로 해석되어 6개월 이내 공개될 경우를 가정하면 조약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① 비밀디자인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비밀보장기간 경과 후 게재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거나 ② 타인 간에만 협의불성립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그러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개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3) ① 출원인과 창작자의 인적사항, ② 심사등록출원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 ③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④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⑤ 부분디자인 및 기본디자인 표시, ⑥ 복수디자인의 일련번호, ⑦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⑧ 기타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제11조 산업디자인의 전자시스템 (Electronic Industrial Design System)

원문	번역
Article 11 Electronic Industrial Design System	제11조 산업디자인의 전자시스템
A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 endeavor to provide a system for electronic applications and is encouraged to provide for the electronic exchange of priority documents.	체약당사자는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전자출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선권 문서의 전자교환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11조는 산업디자인의 전자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SCT/S3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과 나이지리아 대표단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최종 조약은 미국 대표단의 안으로 확정됨
- 체약당사자는 적용가능한 법률(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 즉 당사국의 국내법이나 해당 법적체계에 맞추어 전자출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endeavor to provide)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출원 시스템이 강제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또는 권고임을 나타내고 있음
- 체약당사국이 법적 체계 내에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우리법에서는 서류제출에 관하여 직접제출, 우편제출, 정보통신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출원이 가능한 시스템(특허로)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산업디자인의 전자출원 시스템 - 특허로(www.paten.go.kr)



12. 제12조 서류제출 (Communications)

원문	번역
Article 12 Communications	제12조 서류제출
(1) [Means of Transmittal and Form of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choose the means of transmittal of communications and elect whether to accept communications on paper,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or any other form of communication.	(1) [서류제출 형식 및 전송수단] 체약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그 밖의 형태로 된 서류제출도 선택할 수 있다.
(2) [Language of Communications]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be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2) [서류제출의 언어] (a) 체약당사자는 모든 서류를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where a communication is not in a language admitted by its Office, a translation of that communication by an official translator or a representative, into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be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b)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서류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체약당사자는 공식 번역가나 대리인에 의해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번역된 서류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any other certification of any translation of a communication, except in those cases prescribed in this Treaty.	(c) 체약당사자는 본 조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의 번역에 대한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d)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c),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translation of a communication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the translation is true and accurate.	(d) 제(c)호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번역 서류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Address for Correspondence, Address for Service and Contact Details] A Contracting Party may, subject to any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ndicate in any	(3) [연락처 등] 체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출원인/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제출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문	번역
communication:	
(i)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 교신을 위한 주소
(ii) an address for service;	(ii) 송달을 위한 주소
(iii) any other address or contact detail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iii)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소 또는 연락처
(4)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communication on paper be signed by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 communication on paper to be signed,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any signature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4) [서면 서류제출 시 서명] (a) 서면으로 서류제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출원인/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서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서명을 인정하여야 한다.
(b)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ny signature, except in respect of any quasi-judicial proceedings or in those case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준사법 절차 관련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대한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c)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authenticity of any signature of a communication on paper.	(c) 제(b)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그 서명의 진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Communications Filed in Electronic Form or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Where a Contracting Party permits the filing of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or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it may require that any such communications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허용한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6)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

원문	번역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in respect of paragraphs (1) to (5),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be complied with.	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하여, 이 조에 언급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7) [Indications in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contain one or mor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7) [서류제출 기재사항] 계약당사자는 서류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기재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presentative] Nothing in this Article regulates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nd the representative of any such person.	(8) [대리인과의 서류제출 수단] 이 조에서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간의 통보 수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2 Communications	Article 8 Communications; Addresses	Article 8 Communications
(1) [Means of Transmittal and Form of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choose the means of transmittal of communications and elect whether to accept communications on paper,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or any other form of communication.	(1) [Form and Means of Transmittal of Communications] (a) Ex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ling date under Article 5(1), and subject to Article 6(1), the Regulations shall, subject to subparagraphs (b) to (d), set out the requirements which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permitted to apply as regards the form and means of transmittal of communications.	(1) [Means of Transmittal and Form of Communications] Any Contracting Party may choose the means of transmittal of communications and whether it accepts communications on paper,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or any other form of communication.
(2) [Language of Communications] (a) A Contracting Party may	(2) [Language of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except where	(2) [Language of Communications] (a) Any Contracting Party may

DLT	PLT	STLT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be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 communication be in a language accepted by the Office.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be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Where the Office admits more than one language,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may be required to comply with any other language requirement applicable with respect to the Office, provided that no indication or element of the communication may be required to be in more than one language.
(3) [Address for Correspondence, Address for Service and Contact Details] A Contracting Party may, subject to any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ndicate in any communication:	(6) [Address for Correspondence, Address for Legal Service and Other Address] A Contracting Party may, subject to any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ndicate in any communication:	
(i)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ii) an address for service;	(ii) an address for legal service;	
(iii) any other address or contact detail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iii) any other addres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4)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a) A Contracting Party may	(4) [Signature of Communications] (a)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3)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a) Any Contracting Party

DLT	PLT	STLT
require that a communication on paper be signed by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 communication on paper to be signed,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any signature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 signature for the purposes of any communication,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any signature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may require that a communication on paper be signed by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 communication on paper to be signed,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any signature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ny signature, except in respect of any quasi-judicial proceedings or in those case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ny signature which is communicated to its Office, except in respect of any quasi-judicial proceedings or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ny signature except, where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so provides, if the signature concerns the surrender of a registration.
(c)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authenticity of any signature of a communication on paper.	(c)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iled with the Office only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authenticity of any signature.	(c)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authenticity of any signature of a communication on paper.
(7) [Indications in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contain one	(5) [Indications in Commun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contain one	(5) [Presentation of a Communication] Any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e presentation of a

DLT	PLT	STLT
or mor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r mor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communication the content of which corresponds to the relevant Model International Form, if any,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8)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presentative] Nothing in this Article regulates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nd the representative of any such person.		(7)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presentative] Nothing in this Article regulates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nd its representative.

나. 해설

- 제12조는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항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서류제출의 수단 및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⁷⁴⁾
- 제12조 제2항 서류제출의 언어를 규정하고 있음. a호에 따라 행정청은 모든 서류제출은 해당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음. b호에 따라 서류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서류제출을 번역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간소화를 위해 조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에 의한 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그 밖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⁷⁵⁾⁷⁶⁾
- 제10조 제2항 b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의 경우 누가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됨. 계약당사자는 등록된 대리인만 서류제출 내용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⁷⁷⁾
- 제10조 제2항 d호는 계약당사자가 번역본이 원본 서류와 일치한다는 진술서를 요구

74) Note on Article 10.01.

75) Note on Article 10.02.

76) 예를 들어, 소유권(명의) 변경 등기 요청의 경우에는 조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본 문서가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77) Note on Article 10.02.

할 수 있음을 규정, 누가 그러한 진술서를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는 각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한 진술은 행정청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된 대리인 또는 공식 번역가가 작성할 수 있음⁷⁸⁾

- 제10조 제3항은 부분적으로 PLT 제8조 제6항을 모델로 하고 있음.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 또는 기타 규정된 주소 및 연락처의 표시는 모든 서류제출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될 수 있음. 특히 계약당사자가 대리인을 요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해당 지역에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주소의 표시가 요구될 수 있음⁷⁹⁾ 본 조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락처 세부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b호에서 규정(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하고 있음⁸⁰⁾
- 제10조 제4항은 서면 서류제출 시의 서명에 관한 사항임. 간소화 취지에 따라 본 조항은 준사법절차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에 대한 선서, 공증,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함. 다만 제10조 제4항 c호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명의 진위여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⁸¹⁾
- 제10조 제8항은 계약당사자가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해당 서류제출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번호 등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서류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PLT 제8조 제5항을 모델로 하고 있음

다. 관련 국내법

법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78) Note on Article 10.03.

79) Note on Article 10.04.

80) Note on Article 10.06.

81) Note on Article 10.07.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자적 형식의 서류 제출 관련)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출원인 및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정보망을 구축하고 행정기관 중 최초로 모든 행정서비스 절차를 컴퓨터통신망에 의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문서의 제출과 효력) 디자인출원서 기타 특허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서면에 의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종래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13. 제13조 갱신 (Renewal)

원문	번역
Article 13 Renewal	제13조 갱신
(1) [Request for Renewal; Fee] (a) Where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renewal of the term of protection, it may require that the renewal be subject to the filing of a request and that such request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1) [갱신 신청 및 수수료] (a) 계약당사자가 보호 기간의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갱신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that renewal is sought;	(i) 갱신하려고 하는 취지의 표시
(i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ii) 디자인권자의 주소 및 성명
(iii) the number(s) of the registration(s) concerned by the renewal;	(iii)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
(iv) an indication of the term of protection for which renewal is requested;	(iii)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
(v) where the holder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v)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
(vi) where the holder has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ch address;	(vi) 디자인권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vii) where it is permitted that renewal be made for some only of the industrial designs contained in the registration, and such a renewal is requested, an ind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number(s) for which the renewal is, or is not, requested;	(vii) 등록된 산업디자인 일부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고 그러한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 신청된(또는 신청하지 않은) 산업디자인 등록번호의 기재
(viii) where it is permitted that a request for renewal may be fil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holder or its representative, and the request is filed by such a person,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person.	(viii) 디자인권자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갱신이 가능하고 그러한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newal, a fee be paid to the Office.	(b) 계약당사자는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행정청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Period for Presentation of the Request	(2)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기간] 계약당사자

원문	번역
for Renewal and Payment of the Fe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renewal referred to in paragraph (1)(a) be presented, and the corresponding fee referred to in paragraph (1)(b) be paid, to the Office within a period fixed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subject to the minimum period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갱신 기간 내에 행정청에 제(1)항 제(a)호에 따른 갱신 신청과 제(1)항 제(b)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최소 기간을 따른다.
(3)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in Article 12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for renewal.	(3) [기타 요건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갱신 요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2조에서 정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13조는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갱신 신청 시 갱신 신청 또는 수수료 납부기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음. 제13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만 적용됨⁸²⁾
- 제13조 제1항 b호에 따라 본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갱신과 관련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수료의 납부 대상(행정청, 정부의 다른 기관, 또는 은행)은 규제하지 아니함. 또한 납부방법도 규제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당사국은 행정청의 예금계좌 또는 전자거래를 위한 납부 등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당사국은 수수료 금액 및/또는 납부 방법을 수수료 명세서 등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⁸³⁾

82) Note on Article 11.01.

83) Note on Article 11.01.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 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이하에서 등록료의 추가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료의 추가납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다음해 즉 4년차부터의 연차분 등록료는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할 수 있음
-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만료의 효과)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 다만,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안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납부기간이 끝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⁸⁴⁾

84)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03면.

- (등록료의 보전)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납부기간(법 제79조 제3항) 또는 추가납부기간(법 제82조)의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하여 추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며,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 이는 권리의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함임
- (디자인권 등의 회복절차) 법 제84조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①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②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의 효력) 등록료의 납부기간 경과 후 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이 없는 경우 디자인권은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되거나 디자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가 있었던 때는 그 디자인권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해서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하여 일단 소멸된 디자인권은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라.쟁점 및 후속과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여 권리 설정등록일이 갱신 만료일. 또한 연차등록료는 갱신 만료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고, 디자인보호법은 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일정기간의 추가 기간을 인정하고 있음
- 갱신만료일과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갱신 만료일로부터 추가납부기간 6개월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과의 충돌사항 없음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14. 제14조 기한의 구제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원문	번역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제14조 기한의 구제
(1) [Extension of Time Limits]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xtension,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f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filed with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the request is filed,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1) [기한 연장]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갱신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우, 행정절차에 대한 기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기간만큼의 기한 연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i) prior to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or	(i)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 또는
(ii) after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an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그 기한은 만료되었으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한 전까지
(2) [Continued Processing]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a time limit under paragraph (1),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and, if necessary,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2) [절차의 계속]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계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절차의 계속이나, 필요한 경우,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 회복을 인정하여야 한다.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을 제출한 경우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said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ii) 그 신청이 제출되고, 그 기한이 적용되는 위 절차에 대한 모든 요건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된 경우

원문	번역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time limits under paragraph (1) or continued processing under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예외]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계속에 관한 예외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정한 것 외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4)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4)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lief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1) or (2),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기타 요건 금지] 본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된 구제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언급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6)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may not be refused without the applicant or holder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6) [거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거절예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은 거절될 수 없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Article 14 Relief Measures in Ca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ime Limits
(1) [Extension of Time Limits]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1) [Extension of Time Limits] A Contracting Party may provide for the	

DLT	PLT	STLT
extension,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f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filed with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the request is filed,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extension,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f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the request is filed,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 prior to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or	(i)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or	(1) [Relief Measure Before the Expiry of a Time Limit] A Contracting Party may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filed with the Office prior to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ii) after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an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an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Relief Measures After the Expiry of a Time Limit] Wher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the time limit concerned")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the

DLT	PLT	STLT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lief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filed with the Office:
(2) [Continued Processing]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a time limit under paragraph (1),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and, if necessary,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2) [Continued Processing] Where an applicant or ow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extension of a time limit under paragraph (1)(ii),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patent and, if necessary,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own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patent, if:	(ii)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for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DLT	PLT	STLT
the said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concerned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time limits under paragraph (1) or continued processing under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for the relief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for any of the relief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4)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4)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4) [Fe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ny of the relief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lief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1) or (2),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lief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1) or (2),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any of the relief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6)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6)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DLT	PLT	STLT
under paragraph (1) or (2) may not be refused without the applicant or holder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may not be refused without the applicant or owner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나. 해설

- (취지 및 관련 조약) PLT와 STLT 모두 구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한 미준수로 인한 결과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함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고 아무런 구제조치가 없다면 특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권리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특허권 상실의 회복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PLT와 STLT는 구제조치에 관한 접근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상표는 다시 출원할 수 있으나 한번 권리를 상실한 특허는 산업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임⁸⁵⁾ 해당 조항은 산업디자인의 권리상실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PLT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음. 이는 특정상황에서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권리상실을 수반하는 기한 미준수의 경우에 대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보장함⁸⁶⁾

표 14 PLT와 STLT에서의 구제조치 비교

PLT	STLT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한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계약당사자는 기한 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계약당사자는 기한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기한 연장, 절차의 계속 또는 권리회복 중 하나 이상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구제의 의무)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권리상실을 수반하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미준수가 발생했거나, 해당 지연이

85) Note on Article 12.01–12.02.

86) Note on Article 12.06.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채약당사국은 권리회복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⁸⁷⁾

- (구제의 해석) 제14조는 채약당사자가 기한의 구제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및/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계속이 될 수 있음
- (기한의 해석) 채약당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시하는 구제책은 “행정청에 대한 절차⁸⁸⁾에 관하여 행정청이 규정한 조치에 대한 기한”으로 한정됨. 행정청이 규정한 기한을 결정하는 것은 각 채약당사자의 재량임. 따라서 행정청이 정하지 않은 기한, 특히 국내법 또는 지역 조약에 따라 설정된 기한에는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제14조는 행정청에 제기되지 않은 소송(ex. 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한 기한에도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의 다른 기한들의 경우에는 ❶ 채약당사자가 제14조와 동일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❷ 제14조와 다른 요건을 적용하거나, ❸ 구제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함
- 제14조 제2항에서는 PLT와 같이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채약당사자가 제1항 (ii)에 따른 기한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절차의 계속으로 구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예외) 구제조치 및 권리회복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외는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외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절차에 대해 이중으로 구제조치를 받는 등 구제조치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

87) Note on Article12.05.

88) 행정청에 대한 절차의 해석은 제1조에 따른다.

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2.29>

1.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법 제38조제2항(출원 보완), 제47조(절차 보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 법정기간이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함.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상 법정기간에는 법 제51조에 규정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서류 등의 제출(3개월), 법 제120조에 규정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3개월) 등이 있음
- 지정기간이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법에 근거하여 지정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근거하여 지정한 기간을 말하며,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이나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임. 지정기간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이 하자 있는 경우 보완을 명하는 기간(1개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2개월) 등이 있음
- 법상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함. 법정기간 가운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익신청이유 등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120조에 따른 심판 청구기간을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지정기간에 대하여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흠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그러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대상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기간은 DLT 규정(원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과 충돌 없음, 다만 디자인보호법에는 기한만료 이후 연장신청이나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함
- 관련하여 “정당한/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시기적 요건(2개월 이내)만 만족하면 연장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판단과정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결정 시기가 유동적으로 변함.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상표법의 경우 STLT의 준수를 위하여 거절이유(상표법 제55조③)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이유(상표법 제87조③)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절차 계속 신청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① 기한만료 후 연장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 현행법대로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만 가능하게 할 경우 ②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5. 제15조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원문	번역
Article 15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제15조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
(1) [Reinstatement of Rights] If a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a relief measure under Article 14(1)(ii) or 14(2), the Office shall reinstate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if:	(1) [권리회복] 계약당사자가 제14조제(1)항(ⅱ)호 또는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사무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에서 행동을 위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ⅰ)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권리회복의 취지의 신청을 제출할 것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said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ⅱ) 그 신청이 제출되고, 그 기한이 적용되는 위 절차에 대한 모든 요건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될 것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and	(ⅲ)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그 신청에 기재할 것, 그리고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any delay was unintentional.	(ⅳ)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음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원문	번역
(2) [Exceptions]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provide for the reinstatement of rights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예외] 제(1)항에 따른 권리 회복에 관한 예외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정한 것 외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3)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4) [증거] 계약당사자는 제(1)항 제(Ⅲ)목에서 정한 사유를 뒷받침 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5)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없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5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Article 12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by the Office	Article 14 Relief Measures in Ca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ime Limits
(1) [Reinstatement of Rights] If a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a relief measure under Article 14(1)(ii) or 14(2), the Office shall reinstate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1) [Request]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n applicant or ow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failure has the direct	(2) (iii)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concerned

DLT	PLT	STLT
or registration,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if: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patent, the Office shall reinstate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owner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patent concerned, if: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the failure was unintentional.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said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for the said action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and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and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any delay was unintentional.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any delay was unintentional.	

DLT	PLT	STLT
(2) [Exceptions]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provide for the reinstatement of rights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Exceptions]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for the reinstatement of rights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for any of the relief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4) [Fe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ny of the relief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5)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5)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나. 해설

- 본 조항은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에 관한 것으로서 PLT 제12조를 모델로하고 있음. 다만 권리회복과 관련하여 특허분야에서 발전된 법리와 관행이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본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음⁸⁹⁾
-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하여 권리회복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는 제14조와 달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의 고의가 없음을 행정청이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에 의함. 또한 제14조와 달리 제15조는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만 행정청이 정한 기한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⁹⁰⁾
-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때(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라는 문구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권리의 상실을 직접 초래하는 상황을 포괄하기 위한 것임.
- 예를 들어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출원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서류를 발행함. 이 서류에는 지정된 납부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정된 기간 만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디자인출원이 기각됨. 따라서 이러한 기한의 미준수는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상실을 직접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권리회복을 허용하여야 함⁹¹⁾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제47조(절차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89) Note on Article 13.04.

90) Note on Article 13.01.

91) Note on Article 13.03.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 또는 제120조(등록거절·취소결정)에 따른 심판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기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 등록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 내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차의 무효)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본법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에 따라 당해 흠결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절차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보호법 제19조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디자인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절차에 대한 추후 보완을 인정하는 규정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귀책사유 없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소권이 상실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후보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임
- (추후보완의 사유) 법 제19조에 의한 추후보완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 따라서 대리인의 과실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하며,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음

- (추후보완 기간) 현행법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전의 법은 14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은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같은 법의 보정명령 위반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 청구나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어 2016년 개정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었음.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함

라.쟁점 및 후속과제

- 절차수수료 및 등록료 미납 등 절차보정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는 가능하나, 현행법상 재심사 청구의 추후 보완은 불가하여 조약과 일치하지 아니함. 따라서 제19조 등에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절차의 추후보완) 디자인보호법 제19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보정각하결정, 등록거절결정,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가 가능함. 다만, 재심사 청구(법 제64조)의 추후 보완은 불가하여 조약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법 제19조 등에서 이를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에 대한 해석) 디자인보호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조약에서의 표현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보다 넓은 의미로써,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하는 바 조약과의 충돌은 없다고 판단됨

표 15 판례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해석

- **(전화선의 수리·불량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원고의 출원대리인측의 고장신고로 2011. 12. 5.과 같은 달 6. 원고의 출원대리인 사무실 전화선로에 대해 한국통신에서 접촉불량 등으로 수리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출원대리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진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팩스를 발송한 날이 2011. 12. 2.로서 사무실을 이전한 날(같은 달 1.)과 전화선로 수리작업을 한 날 사이였으므로, 원고의 출원대리인은 적어도 전화선로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2011. 12. 5, 6일 경에는 위 팩스 발송 당시 전화선로가 접촉불량이었어서 팩스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중국측대리인에게 송부한 팩스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출원대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이고, 전화선로가 최종적으로 수리된 2011. 12. 6.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료일이 23일이나 남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사유는 특허법 제17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6. 29. 선고 2012허4322 판결)
- **(특허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 특허법 제79조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이 특허권 소멸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료 미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료 미납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2839 판결)
- **(원고의 수감으로 인해 수수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료를 미납한 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설정등록 당시부터 특허료 불납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안내서는 단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허권자들에 대한 특허료 납부고지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료 미납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추가납부기간 등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료에 대한 정상납부기간 및 추가납부기간을 합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이 경우 원고가 비록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납부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특허료 미납부가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81384 판결)

16.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원문	번역
Article 16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
(1)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if:	(1)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출원(이하 ‘후출원’)과 관련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행정청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i) 당해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그리고
(iii) the filing date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is not later than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priority period calculated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iii)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된 우선권 기간 만료일 보다 늦지 않은 경우
(2) [Delayed Filing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which claims or could have claimed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has a filing date which i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priority period expired, but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Office shall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if:	(2) [후출원의 지연] 선출원으로부터 우선권 주장(된)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만료일 이후 이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인 경우, 계약당사자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행정청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당해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원문	번역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iority period; and	(iii) 당해 신청에 우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된 경우, 그리고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file the subsequent application within the priority period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as unintentional.	(iv)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음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an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2).	(3)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4) [증거]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제(2)항제(iii)목에 따른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5)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없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6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Article 13 Coll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관련 조항 없음
(1)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	(1)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Except where otherwise prescribed	

DLT	PLT	STLT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if:	in the Regulations,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if: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ii) the filing date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is not later than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priority period calculated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iii) the filing date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is not later than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priority period calculated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2) [Delayed Filing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which claims or could have claimed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has a filing date which i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priority period expired, but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2) [Delayed Filing of the Subsequent Appl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rticle 15,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which claims or could have claimed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has a filing date which i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priority period expired, but within the time limit	

DLT	PLT	STLT
Regulations, the Office shall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if: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Office shall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if: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iority period; and	(iii) the request stat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iority period; and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file the subsequent application within the priority period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as unintentional.	(iv) the Office finds that the failure to file the subsequent application within the priority period occurred in spite of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as unintentional.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an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2).	(4)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s (1) to (3).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5)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declaration or o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DLT	PLT	STLT
paragraph (2)(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paragraph (2)(iii) be filed with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5)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6)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in Case of Intended Refusal] A request under paragraphs (1) to (3) may not be refused, totally or in part, without the requesting party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observations on the intended refus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나. 해설

- 제16조는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PLT 제13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조약 제16조는 출원인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본 조항은 제출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와 이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또한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된 후 후출원이 제출되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의 우선권 회복을 규정함. 이는 출원서를 우선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⁹²⁾

다. 관련 국내법

⁹²⁾ Note on Article 14.02

[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출원일로부터 3개월)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5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취지) 디자인권은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국에 각각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 절차 및 비용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됨.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출원인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조약당사국 국민이 제1국에 정규의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를 적용함에서 있어서 제1국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여야 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1조 제5항, 제51조의 3 제1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우선권주장 및 증거서류 제출을 인정할 수 있음

표 16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해석

- (정당한 사유) 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건의 발생 및 소멸 일자, ② 사건과 관계된 자, ③ 사건의 내용, ④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취한 조치를 관련 담당자와 조치내용, 조치시기에 비추어 상세하게 소명 필요
-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관련자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전산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시스템 제작·판매사 등에서 작성한 시스템 동작오류 증명서면, 업무관련 이메일, 업무 메뉴얼, 계약서 사본, 관계자 진술서 등도 제출 가능

- 절차와 관계된 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당사자 각각에 대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만 인정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① 변리사 등 임의대리인 단독의 실수, 태만, ② 출원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의 주장, 실수, ③ 법령지식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위임한 결과, ④ 기간 미준수의 직접적 원인을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경우, ⑤ 급작스런 중한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등이 아닌 일상적인 질병, 중하지 않은 질병 치료, ⑥ 출원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는 없으나 일반적인 관리의무 소홀이나 사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 ⑦ 출원인과 대리인간의 소통결여 등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 (서류의 제출)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우선권 주장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우선권 주장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우선권증명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없음. 단 우선권 증명서류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심사를 보류함. 우선권증명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미제출사유가 법 제5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하여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일부 불합치 부분이 존재함
- 우리 법 제51조의 2 제1항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않아

조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2 제4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가 허용되는 반면, 조약에서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여 이 역시 조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임
- 우리나라는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매우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6개월)이라면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할 것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 일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심사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함
- (우선권 주장의 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 3은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조약 제14조 제2항 (iv)에서는 ‘상당한 주의’ 또는 그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음을 관청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된 문구에 차이가 있으나, 실무나 해석상 불일치로 판단되지 아니함. 또한 규칙 제12조 제4항에서는 우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상 불일치 없음

17.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원문	번역
Article 17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recording:	(1) [실시권 등록 기록에 대한 요건] 관련 법률에서 실시권의 기록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것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2) [Fees] In respect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the Office may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2) [수수료] 실시권 기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Single Request]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licens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the holder and the licensee are the same for all registrations, and the request indicates the scope of the license with respect to all registrations.	(3) [단일신청] 실시권이 하나 이상의 기록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등록번호들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모든 기록에 대한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가 동일하며, 모든 기록에 대한 실시권의 범위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단일 신청만으로도 충분하다.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a) No requirement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and in Article 12 may be demanded in respect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y not be required:	(4) [기타 요건 금지] (a) 실시권의 기록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언급한 것 이외의 요건은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i) the furnishing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i)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증명서 제출

원문	번역
the subject of the license;	
(ii) an indication of the financial terms of the license contract.	(ii) 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 기재
(b) Subparagraph (a)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recording of the license.	(b) 제(a)호는 실시권 기록 외의 목적을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기존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Evidence] It may be required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supporting document.	(5) [증거] 신청서 또는 증명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Requests Relating to Applications] Paragraphs (1) to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cording of a licens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such recording.	(6) [출원과 관련한 신청]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실시권 기록 규정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출원과 관련한 실시권 기록 신청에 준용한다.
(7) [Request for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With the exception of paragraph (4)(a)(ii), paragraphs (1) to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7) [담보권 기록 신청] 제(4)항제(a)호제(ii)목을 제외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담보권 기록 신청에 준용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7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7 Request for Recordal of a License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DLT	PLT	STLT
Regulations, and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Regulations, and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Fees] In respect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the Office may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2) [Fe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cordal of a license, a fee be paid to the Office.
(3) [Single Request]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licens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the holder and the licensee are the same for all registrations, and the request indicates the scope of the license with respect to all registrations.		(3) [Single Request Relating to Several Registrations]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licens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the holder and the licensee are the same for all registrations, and the request indicates the scope of the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with respect to all registrations.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a) No requirement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and in Article 12 may be demanded in respect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y not be required: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a)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cordal of a license with its Offic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y not be

DLT	PLT	STLT
		required:
(i) the furnishing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i) the furnishing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ii) an indication of the financial terms of the license contract.		(iii) an indication of the financial terms of the license contract.
(b) Subparagraph (a)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recording of the license.		(b) Subparagraph (a)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recording of the license in the register of marks.
(5) [Evidence] It may be required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supporting document.		(5) [Evidenc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document referred to in the Regulations.
(6) [Requests Relating to Applications] Paragraphs (1) to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cording of a licens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such recording.		(6) [Requests Relating to Applications] Paragraphs (1) to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cordal of a license for an application,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such recordal.
(7) [Request for Recording		

DLT	PLT	STLT
of a Security Interest] With the exception of paragraph (4)(a)(ii), paragraphs (1) to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나. 해설

- 조약 제17조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PLT와 STLT의 실시권 기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조약 제17조 제1항의 서두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실시권의 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동조 제4항 a호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또는 서류제출에 관한 제12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재사항이나 항목은 요구되지 아니함.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는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⁹³⁾
- 조약 제17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기록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각 계약당사자는 수수료의 금액과 기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실시권 기록 요청을 수락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는 기록 요청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단일 요청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음. 즉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실시권 기록에 대한 단일 요청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⁹⁴⁾
- 조약 제17조 제4항은 실시권의 등록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히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증명서의 제출이나 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을 기재하는 것은 특히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함. 그러나 실시권의 계약서 또는 그 번역본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제15조 제2항 a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실시권 기록 요청에 계약서 발췌본 또는 실시권 계약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⁹⁵⁾

93) Note on Article 15.02.

94) Note on Article 15.03.

- 조약 제17조 제5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다른 법률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세무 또는 통화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에 해당), 통계당국(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반독점 또는 권위있는 경쟁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권 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함⁹⁶⁾
- 조약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요건은 출원과 관련된 실시권 기록에도 적용되지만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STLT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 조약 제17조 제7항에서 담보권 기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PLT 제17조 제9항에 근거함. 이는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의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거나 손실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할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취득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와 관련되어 있음. 동조 제1항에 다른 실시권의 기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가 담보권 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기록의 신청을 허용하는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담보권을 등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⁹⁷⁾ 또한 동조의 도입부에서 “단 제4항 a호 (ii)는 제외한다”는 문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담보권 기록 신청을 위하여 담보권의 금융 조건에 관한 기재를 요구할 수 있음⁹⁸⁾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95) Note on Article 15.04.

96) Note on Article 15.05.

97) Note on Article 15.07.

98) Note on Article 15.08.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98조는 디자인권의 이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서 등록을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전용실시권은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⁹⁹⁾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즉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설정,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한 이전, 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임. 본조에 의하면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과 차이가 있음¹⁰⁰⁾

라.쟁점 및 후속과제

- 디자인보호법상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만 설정 등 효력이 발생하므로 DLT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및 제38조는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일치가 존재함
- 담보권의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규정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99)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9, 687면.

100)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71면.

18. 제18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의 변경·취소 신청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원문	번역
Article 18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제18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의 변경·취소 신청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1) [실시권의 기록 변경 또는 취소 신청 요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실시권 기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기록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할 것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2)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2) [담보권 기록의 취소 신청 요건] 담보권의 기록 취소 신청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Other Requirements] Article 17(2) to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and to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3) [기타 요건]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실시권의 기록 변경·취소 신청 및 담보권의 기록 취소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8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8 Request for Amendment or

DLT	PLT	STLT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Cancellation of the Recordal of a License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recordal of a license with its Office, that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al of a license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 be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be accompanied by the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3) [Other Requirements] Article 17(2) to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and to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2) [Other Requirements] Article 17(2) to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al of a license.

나. 해설

- 제18조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의 변경·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STLT 제18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해당 부분의 설명은 제17조에서의 설명으로 같음함

라.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19. 제19조 실시권 미기록의 효과 (Effects of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원문	번역
Article 19 Effects of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제19조 실시권 미기록의 효과
(1)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with the Office or with any other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nor the protection of that industrial design.	(1) [산업디자인 등록과 보호의 유효성] 계약당사자의 행정청 또는 다른 기관에 실시권을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의 유효성 또는 산업디자인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Certain Rights of the Licensee] A Contracting Party may not require the recording of a license as a condition for any right that the licensee may have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to join infringement proceedings initiated by the holder or to obtain, by way of such proceedings, damages resulting from an infringement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2)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자가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거나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러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19 Effects of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9 Effects of the Non-Recordal of a License
(1)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non-recording of a license with the Office or with any other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1)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k] The non-recordal of a license with the Office or with any other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DLT	PLT	STLT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nor the protection of that industrial design.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or the protection of that mark.
(2) [Certain Rights of the Licensee] A Contracting Party may not require the recording of a license as a condition for any right that the licensee may have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to join infringement proceedings initiated by the holder or to obtain, by way of such proceedings, damages resulting from an infringement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2) [Certain Rights of the Licensee] A Contracting Party may not require the recordal of a license as a condition for any right that the licensee may have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to join infringement proceedings initiated by the holder or to obtain, by way of such proceedings, damages resulting from an infringement of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나. 해설

- 제19조는 실시권 미기록의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STLT 제19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조약 제19조 제1항은 산업디자인 등록과 보호의 유효성과 실시권 기록 여부를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음. 계약당사자의 법률이 실시권 기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산업디자인의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 조항에 의해 행정청 또는 계약당사국의 다른 정부기관(예컨대 세무·통화·통계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실시권의 기록과 관련이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¹⁰¹⁾

¹⁰¹⁾ Note on Article 17.01.

- 조약 제19조 제2항은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예컨대 민사소송 등)에 실시권자가 참여 가능하고, 산업디자인의 실시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실시권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권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두 가지 옵션이 제안되었으나, STLT의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¹⁰²⁾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02) Note on Article 17.02.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참가) 심판절차에서 「참가」란 심판계속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 당사자의 한쪽에 가담하여 그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특허심판에서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구분될 수 있음,¹⁰³⁾ 디자인보호법 제143조는 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참가인의 지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별도의 새로운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¹⁰⁴⁾
-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심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 본 조항에 의한 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는 심판청구인 측에만 참가할 수 있음. 한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실시권자 또는 질권자 등이 포함되며,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의 참가인과는 달리, 본 조항의 참가인은 심판 청구인 측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측에도 참가할 수 있음¹⁰⁵⁾

라.쟁점 및 후속과제

- (등록과 보호의 유효성) 디자인보호법 제98조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질권 설정 등의 제한에 국한됨. 따라서,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권의 유효성 및 보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아, 조약과는 충돌 없음
- (실시권자의 특정권리 - 참가) 조약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디자인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실시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심판 참가만 규정할 뿐 소송 참가에 대한 규정은 없음

103)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527면.

104)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7, 873면.

105)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528면.

- (심판 참가) 우리 법 제143조(참가)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참가의 경우 심판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함. 등록된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인 자격이 있으므로 당사자 참가 및 보조 참가 가능, 한편, 미등록 전용실시권자(독점적 라이선스) 또는 통상실시권자라도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함,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용)실시권자라도 당사자 참가 가능. 보조 참가(제3항)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 (소송 참가)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 없음. 등록된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참가도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실시권자(독점적 라이선스)라면 소송상 보조참가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20.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Indication of the License)

원문	번역
Article 20 Indication of the License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n indication that the industrial design is used under a license, full or partial non-compliance with that requir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nor the protection of that industrial design.	체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의 실시권을 사용한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준수는 그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유효성이나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0 Indication of the License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20 Indication of the License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n indication that the industrial design is used under a license, full or partial non-compliance with that requir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nor the protection of that industrial design.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n indication that the mark is used under a license, full or partial non-compliance with that requir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or the protection of that mark, and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Article 19(3).

나. 해설

- 조약 제20조는 실시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STLT 제20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상품화된 물품에 실시권 계약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실시권 사실 기재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만, 관련 법률에 의해 그러한 실시권 사용 사실의 기재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음. 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규정함¹⁰⁶⁾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 조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본 규정은 디자인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업자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일반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¹⁰⁷⁾
- 본조에서 디자인등록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이며, 이들 이 외의 자에 의한 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본조의 규정은 ‘표시를 할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 등록표시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¹⁰⁸⁾

106) Note on Article 18.01.

10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1129면.

108)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705면.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디자인보호법 제214조에서 실시권자가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등록디자인” 문자와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약과의 충돌 없음

21.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 신청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원문	번역
Article 21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a)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the change be made either by the holder or by the new owner.	(1) [신청요건] (a) 디자인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새로운 디자인권자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기록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contain some, or all, of th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Requirements Concerning Supporting Documents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2) [명의변경 기록을 위한 증빙서류 요건]
(a)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el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merge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which originates from a competent authority and evidences the merger, such as a copy of an extract from a register of commerc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b)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합병증명서의 사본(등기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본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당국이나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Where there is a change in one or	(c) 계약 또는 합병에 의한 다수의 공동권리자

원문	번역
more, but not all, of several co-holders, and such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or a merge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holder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give its express consent to the change in ownership, in a document signed by such co-holder.	일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공동권리자가 그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통하여 소유권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d)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does not result from a contract or a merger but from another ground, for example, by operation of law or a court decis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evidencing the chang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d) 계약이나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소유권 변경 등), 계약당사자는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해당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본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당국이나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3)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Single Request]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hang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holder and the new owner are the same for each registration, and that the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4) [단일 신청] 2이상의 등록과 관련한 소유권 변경 신청에서, 각 등록별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모든 등록번호들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단일 신청만으로도 충분하다.
(5) [Change in the Ownership of an Application] Paragraphs (1) to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concerns an applic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tion number of the application concerned has not yet	(5) [출원의 소유권 변경]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을 특정하여 소유권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원문	번역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the request identifies the applicati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6)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5) and in Article 12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6)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소유권 변경 신청에 대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7)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or further evidence where paragraph (2)(b) or (d) applies,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reasonably doubts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sent Article.	(7) [증거] 제(2)항제(b)호 또는 제(d)호 적용시, 행정청이 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본 조에서 언급된 문서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1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1 Change in Ownership
(1)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a)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the change be made either by the holder or by the new owner.		(1) [Change in the Ownership of a Registration] (a)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al of the change by the Office in its register of marks be made by the holder or by

DLT	PLT	STL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owner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owner") in a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and the change to be recorded.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contain some, or all, of th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Requirements Concerning Supporting Documents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a)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el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indicate that fact and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following:
(b)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merge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which originates from a competent authority and evidences the merger, such as a copy of an extract		(c)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merger,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indicate that fact and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which document originates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evidences the merger, such

DLT	PLT	STLT
from a register of commerc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as a copy of an extract from a register of commerc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c) Where there is a change in one or more, but not all, of several co-holders, and such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or a merge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holder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give its express consent to the change in ownership, in a document signed by such co-holder.		(d)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 of one or more but not all of several co-holders and such change in ownership results from a contract or a merger,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holder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give its express consent to the change in ownership in a document signed by it.
(d)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does not result from a contract or a merger but from another ground, for example, by operation of law or a court decis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evidencing the chang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by		(e)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does not result from a contract or a merger but from another ground, for example, from operation of law or a court decision,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indicate that fact and be accompanied by a copy of a document evidencing the change and that that copy be certified

DLT	PLT	STLT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3) [Fee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g)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4) [Single Request]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hang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holder and the new owner are the same for each registration, and that the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5) [Change in the Ownership of an Application] Paragraphs (1) to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hange in ownership concerns an applic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tion number of the application concerned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the request identifies the applicati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r in the Address for Service]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f any, and to any change relating to the address for service, if any.

DLT	PLT	STLT
(6)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5) and in Article 12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furnishing of any certificate concerning the change may not be required.
(7)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or further evidence where paragraph (2)(b) or (d) applies,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reasonably doubts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sent Article.		(4) [Evidenc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or further evidence where paragraph (1)(c) or (e) applies,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at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or in any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sent Article.

나. 해설

- 조약 제21조는 명의(소유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STLT 및 PLT의 명의 변경 등기에 관한 조항을 상당 부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조약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명의 변경 요청 및 증빙 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며 이러한 요청 및 증빙서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¹⁰⁹⁾

¹⁰⁹⁾ Note on Article 19.02.

- 조약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명의 변경의 요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특히 각 계약당사자는 명의 변경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변경 기록 요청을 수락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는 요청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그러한 단일 요청에 대한 수수료의 구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즉, 계약당사자는 단일 요청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명의변경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¹¹⁰⁾
- 조약 제21조 제5항은 출원과 관련하여 명의 변경도 기록할 수 있음을 명시함. 출원 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에게 별도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출원서를 식별하는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¹¹¹⁾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라.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설정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지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리자 전원

- 디자인보호법 제96조는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규정으로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디자인권의 공유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¹¹²⁾

110) Note on Article 19.03.

111) Note on Article 19.04.

- (디자인권의 공유) 디자인권의 공유라 함은 하나의 디자인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갖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 필요,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분의 양도 등은 효력이 없음¹¹³⁾

라. 쟁점 및 후속과제

- (기재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DLT와 충돌 없음
- (추가요건) 권리이전 신청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7호)하며, 이는 신청서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제출로써 DLT와 충돌 없음
- (공동권리자)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2항은 반드시 공동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DLT와 충돌 없음

112)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61면.

113)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63-1364면.

22. 제22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원문	번역
Article 22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제22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1) [Changes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Holder] (a)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but there is a change in its name and/or addres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the change by the Office be made by the holder in a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and the change to be recorded.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a) 디자인권자의 변경은 없으나, 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변경 기록신청이 권리자의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contain some, or all, of th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b)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c) 계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hang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d) 변경이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경우에도, 관련된 모든 등록번호가 신청에 기재되었다면 하나의 신청으로 충분하다.
(2)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Applican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hange concerns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or both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and a registration or registrations,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tion number of any application concerned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the request otherwise identifies that applicati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변경이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당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
(3)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r in the Address for Service]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f any, and to any change relating to the address for service, if any.	(3) [대리인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in Article 12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furnishing of any certificate concerning the change may not be required.	(4)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서 언급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5)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5) [증거]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이 신청서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2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0 Changes in Names or Addresses
(1) [Changes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Holder] (a)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but there is a change in its name and/or addres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the change by the Office be		(1) [Changes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Holder] (a)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person of the holder but there is a change in its name and/or addres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the recordal of the change by the Office in

DLT	PLT	STLT
made by the holder in a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and the change to be recorded.		its register of marks be made by the holder in a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and the change to be recorded.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contain some, or all, of the indica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c)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c)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d)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hang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d)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hange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2)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Applican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hange concerns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or both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and a registration or registrations,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tion number of any application concerned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2)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Applican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hange concerns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or both an application or applications and a registration or registrations,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tion number of any application concerned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the request

DLT	PLT	STLT
representative, the request otherwise identifies that applicati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therwise identifies that applicati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r in the Address for Service]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f any, and to any change relating to the address for service, if any.		(3)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r in the Address for Service]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f any, and to any change relating to the address for service, if any.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in Article 12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furnishing of any certificate concerning the change may not be required.		(4)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furnishing of any certificate concerning the change may not be required.
(5)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5) [Evidenc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나. 해설

- 제22조는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STLT 제10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제22조 제1항 c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요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각 계약당사자는 변경과 관련된 등록 수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동 조 제1항 d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변경 기록 요청을 수락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는 요청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그러한 단일 요청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음. 즉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단일 요청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변경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¹¹⁴⁾

다. 관련 국내법

[특허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②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라.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114) Note on Article 20.02.

23. 제23조 오류의 정정 (Correction of a Mistake)

원문	번역
Article 23 Correction of a Mistake	제23조 오류의 정정
(1) [Request] (a) Where an application, a registration or any request communicated to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contains a mistake, not related to search or substantive examination, which is correctable by the Office under the applicable law, the Office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correction of that mistake in the records and publications of the Office be made in a communication to the Offic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older.	(1) [신청] (a) 출원, 등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제출된 그 밖의 신청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오류 조사 또는 실체 심사와 무관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수정 가능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서명한 행정청 등록부 및 공보상의 오류에 대한 보정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replacement part or part incorporating the correction or, where paragraph (3) applies, by such a replacement part or part incorporating the correction for each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계약당사자는 보정 신청에 교체나 수정,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과 관련한 각각의 출원과 등록이 그러한 교체나 수정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subject to a declar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stating that the mistake was made in good faith.	(c)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에게 오류가 선의에 의한 것임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subject to a declar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stating that the said request was made without undue delay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it was made without intentional delay,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e mistake.	(d)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에게, 오류가 발견된 후에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하였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선택에 따라, 오류 발견 후 고의적인 지체없이 신청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Fees]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2) [수수료] (a)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b)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문	번역
(b) The Office shall correct its own mistakes, ex officio or upon request, for no fee.	(b)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자신의 오류를 수수료 없이 보정한다.
(3) [Single Request] Article 2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correction of a mistake, provided that the mistake and the requested correction are the same for all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concerned.	(3) [단일 신청] 모든 관련 출원이나 등록에 대한 오류 및 보정사항이 동일한 경우,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only require that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quest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at the alleged mistake is in fact a mistake, or where it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matter contained in, or of any document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4) [증거] 주장된 오류가 사실인지 또는 오류의 보정 신청에 포함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행정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mal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5) [기타 요건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언급한 것 외의 다른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조약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Exclusions] A Contracting Part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any mistake which must be corrected in that Contracting Party under a procedure for reissue of the registration.	(6) [예외] 계약당사자가 재등록 절차에 따라 보정해야 하는 오류인 경우,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3 Correction of a	관련 조항 없음	Article 12 Correction of a

DLT	PLT	STLT
Mistake		Mistake
(1) [Request] (a) Where an application, a registration or any request communicated to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contains a mistake, not related to search or substantive examination, which is correctable by the Office under the applicable law, the Office shall accept that a request for correction of that mistake in the records and publications of the Office be made in a communication to the Offic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older.		(1) [Correction of a Mistake in Respect of a Registration] (a)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at the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a mistake which was made in the application or other request communicated to the Office and which mistake is reflected in its register of marks and/or any publication by the Office be made by the holder in a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the mistake to be corrected and the correction to be entered.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replacement part or part incorporating the correction or, where paragraph (3) applies, by such a replacement part or part incorporating the correction for each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c)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subject to a declar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stating		

DLT	PLT	STLT
that the mistake was made in good faith.		
(d)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subject to a declar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stating that the said request was made without undue delay or,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it was made without intentional delay,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e mistake.		
(2) [Fees]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fee be paid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c)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in respect of the request, a fee be paid to the Office.
(b) The Office shall correct its own mistakes, ex officio or upon request, for no fee.		
(3) [Single Request] Article 2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correction of a mistake, provided that the mistake and the requested correction are the same for all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concerned.		(d) A single request shall be sufficient even where the correction relates to more than one registration of the same person, provided that the mistake and the requested correction are the same for each registration an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all registrations concerned are indicated in the request.
(4)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only require that evidence in support of the		(4) [Evidence]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DLT	PLT	STLT
request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at the alleged mistake is in fact a mistake, or where it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matter contained in, or of any document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furnished to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at the alleged mistake is in fact a mistake.
(5)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mal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in Article 8 be complied with in respect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6) [Exclusions] A Contracting Part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any mistake which must be corrected in that Contracting Party under a procedure for reissue of the registration.		

나. 해설

- 제23조는 오류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

이 상표보다는 특허와 더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PLT 규칙 제18조를 모델로 삼고 있음

- 조약 제23조는 오류의 정정 요청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계약당사자가 정정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는 정정된 내용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명백히 드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요청의 대상이 아닌 출원서의 정정, 특히 산업디자인의 설명 또는 도면의 보정과 같이 조사보고서 접수 후 자발적으로 또는 실체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정은 규제하지 않음¹¹⁵⁾
- 조약 제23조 제1항 a호 관련, “행정청 등록부 및 공보상의 오류”라는 표현은 조약 제1조 x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기록”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함. 제1항에 따라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오류의 예로는 서지정보 또는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음. “관련법에 따라 행정청이 정정 가능한 경우”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오류가 정정 가능한 지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함¹¹⁶⁾
- 조약 제23조 제1항 b호 관련, 본 조항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정정 또는 대체 부분에 대한 제출요구를 허용하고 있음. 요청이 하나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에 적용되는 경우 행정청은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출원 및 등록에 대해 별도의 교체 또는 저정을 통합한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¹¹⁷⁾
- 조약 제23조 제1항 c호 관련, 본 조항은 신청인의 실수가 기만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오류가 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오류의 정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서 무엇이 선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음¹¹⁸⁾
- 조약 제24조 제1항 d호 관련, 본 조항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 보정 요청이 과도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체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해당 보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과도하거나 고의적인 지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계약당사자의 결정사항으로 예를 들어 요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과도한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¹¹⁹⁾
- 조약 제24조 제4항은 제1항 c호에 언급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선의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제1항 d호에 따라 오류를 발견한 후 과도하거나 고의적인 지체 없이

115) Note on Article 21.02.

116) Note on Article 21.03.

117) Note on Article 21.04.

118) Note on Article 21.05.

119) Note on Article 21.06.

요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보정 요청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하고 있음¹²⁰⁾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66조(직권보정)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120) Note on Article 21.07.

제12조(정정공보 게재대상)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삭제)

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

3. (삭제)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

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제13조(정정공보 발행절차)① 심사관·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받은 정정사항을 정정하여 해당 공보를 발행한다. 다만,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가 직접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정정공보의 발행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직권보정제도) 2013년 개정법 이전에는 출원서에 오타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 후에 보정서 제출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기재사항이 명백히 잘못 적힌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게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신설함¹²¹⁾
- (직권보정 대상) 직권보정이 가능한 “명백히 잘못된 경우”란 디자인의 설명,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순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하더라도 해당 디자인 등록 시권리범위 해석이나 실시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직권보정은 법 제195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
- 직권보정을 하고자 하는 심사관은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결정등본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함(제2항).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음(제3항).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제4항), 이러한 경우에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함(제5항). 또한, 제48조 제1

121)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257면.

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제6항)¹²²⁾

-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써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 디자인권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증서임. 그러나 디자인등록증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디자인등록증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것은 아님. 또한, 디자인등록증을 가진 자를 착오로 디자인권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즉, 디자인등록증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창작자의 노고에 대한 인격권 혹은 명예권적 성격의 증서로서 교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¹²³⁾

라.쟁점 및 후속과제

- (디자인보호법 제66조 관련) 우리법은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이어서 주체적/시기적 요건이 조약과 상이함
- (디자인보호법 제89조, 디자인등록증) 등록증이 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않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정발급하는 절차이나, 등록디자인 공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서면의 전자화) 이는 (i)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전자화한 내용으로서 (ii)통지를 받은 출원인에 한정되므로 DLT 규정을 충족하지는 못함. 또한, (iii)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할 뿐 출원서 보정(예: 우선권 번호의 명백한 오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음. 다만, 실무상 심사정책과 또는 심사과에서 의뢰한 경우에 해당.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와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등록후 명백한 오기를 권리자가 발견한 경우, 수정 가능한 오류라면, 권리자가 등록원부 외에 디자인 공보에 대해서도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2)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259면.

123)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26면.

24. 제24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원문	번역
Article 24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제24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1) [Principles] Technical assistance shall	(1) [원칙] 기술지원 의무
(i) be development-oriented, demand-driven, transparent, targeted and adequate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city of beneficiary countries to implement the Treaty;	(i) 수혜국의 조약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개발지향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이며, 투명하고, 목표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ii) take into account the priorities and the specific needs of receiving countries for enabling the user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ii) 조약 규정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수혜국의 우선순위와 특정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provided under this Treaty shall b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and, where requested, include assistance with:	(2)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a) 동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는 지원과 함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establishing the required legal framework and revising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procedures of design registration authorities;	(i) 필수적인 법적인 틀의 수립과 디자인 등록 당국의 행정관행 및 절차의 개정
(ii) building up the necessary capacity of the Off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viding training of human resources, technological support and awareness raising.	(ii) 사무국이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는 인적자원교육, 기술적 지원, 인식제고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subject to allocation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financing for WIPO activities and measures that are required to implement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3)(a) and Articles 26(1)(c) and 26(2)(vi). v	(b) 기구(WIPO)는 제(2)항 제(a)호, 제(3)항제(a)호 및 제26조제(1)항 제(c)호 및 제26조 제2항제(vi)호에 따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WIPO의 활동 및 조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재원이 허용하는 한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구(WIPO)는 동 조약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

원문	번역
Moreover, the Organization shall seek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financing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of receiving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echnical assistance pursuant to this Treaty.	하여, 수혜국 정부와 국제 금융기구 및 정부간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Other Provisions] (a)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s urge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to the existing digital libraries for registered designs, as well as to ensure the access to them.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communicate published registered design information through such systems. The Organization shall support Contracting Parties in their efforts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ose systems.	(3) [기타 조항] (a) WIPO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기존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등록디자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구(WIPO)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려는 계약당사자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b) Contracting Parties to this Treaty may establish a fee reduction system to the benefit of applicants.	(b) 이 조약의 계약 당사국은 출원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 비교대상 조문 없음

나. 해설

- 제24조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WIPO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의 원칙과 지원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지원 노력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은 DLT의 성안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그룹과 개

도국 그룹 간의 견해차이가 상당하였으며, 그 수준 역시 본문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결의안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였음

- (원칙) 기술지원은 ① 개발지향적, ② 수요 중심적이어야 하며, 이는 ③ 투명하고, ④ 목표를 설정하여, ⑤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며, 기술지원은 수혜국의 우선순위와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이를 통해 수혜국은 조약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표 17 DLT 제24조의 기술지원 원칙의 해설

- 개발 지향적(development-oriented): 수혜국이 조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수요 중심적(demand-driven): 수혜국의 요청과 필요에 맞춘 지원을 하여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 지원 과정이 명확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타겟 설정(targeted): 필요한 분야에 정확히 집중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적합성(adequate): 수혜국의 조약 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함

-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가능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제공은 어디까지나 지원(include assistance with)이라는 점을 강조

표 18 DLT 제24조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의 내용

- 필수적인 법적 틀의 수립, 행정청의 관행 및 절차의 개정
- 인적자원 교육, 기술적 지원, 인식제고 등
- (WIPO의 역할) (재정이 허용하는 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

- (기타사항)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참여 장려, 접근 보장 촉구, 공개된 등록디자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 출원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다.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우리나라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수수료 및 등록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특허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개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발명분위기 조성 및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도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¹²⁴⁾
- 조약 제24조 제3항 b호의 경우, 특정 국적이 아닌 출원인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감면시스템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법에서는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라.쟁점 및 후속과제

- 동 조항으로 인한 당장의 법 개정 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있어 WIPO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124)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13면.

25. 제25조 시행규칙 (Regulations)

원문	번역
Article 25 Regulations	제25조 시행규칙
(1) [Content] (a)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is Treaty provide rules concerning:	(1) [내용] (a) 본 조약의 부속된 시행규칙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i) matters which this Treaty expressly provides to b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본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라고 규정한 사항
(ii) any details usefu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i) 본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유용한 세부 사항
(iii) any administrative requirements, matters or procedures.	(iii) 행정적 요건, 사항 또는 절차
(b) The Regulations also provide for the publication of Model International Forms to be established by the Assembly.	(b) 또한 시행규칙은 총회가 제정한 국제표준양식을 규정한다.
(2) [Amending the Regulations] Subject to paragraph (3), any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shall require three-fourths of the votes cast.	(2) [시행규칙 개정]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칙의 모든 개정에는 행사된 투표수 4분의 3이 요구된다.
(3) [Requirement of Unanimity] (a) The Regulations may specif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which may be amended only by unanimity.	(3) [만장일치의 요구] (a) 시행규칙에서는 시행규칙 중에서 오직 만장일치로만 개정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b) Any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resulting in the addition of provisions to, or the deletion of provisions from, the provisio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a) shall require unanimity.	(b) 제(a)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만장일치에 따른다.
(c) In determining whether unanimity is attained, only votes actually cast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c) 만장일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사된 투표만을 고려한다.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4) [Conflict Between the Treaty and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4) [조약과 시행규칙의 충돌] 본 조약의 규정과 시행규칙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

원문	번역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d those of the Regulations, the former shall prevail.	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가. PLT, STLT와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5 Regulations	Article 14 Regulations	Article 22 Regulations
상세 조문 생략	상세 조문 생략	상세 조문 생략

나. 해설

- 시행규칙의 경우, 본 조약의 본문 이외의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나 행정적 요건, 절차, 및 국제표준양식을 규정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 조약과 시행규칙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함. 시행규칙을 두는 이유는 조약의 세부사항을 부속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조약 본문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시행규칙의 수정요건) 시행규칙의 수정을 위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의 4분의 3(three-fourths)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과반수 보다 높은 기준으로 부속 규정의 수정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일부 시행규칙의 경우 만장일치(unanimity)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할 수 있음. 그리고 만장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을 규정
-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약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26. 제26조 총회 (Assembly)

원문	번역
Article 26 Assembly	제26조 총회
(1) [Composition] (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an Assembly.	(1) [구성] (a) 체약당사자들은 총회를 둔다.
(b)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presented in the Assembly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Each delegate may represent only one Contracting Party.	(b)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한 명의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며, 이 대표자는 대리 대표자, 자문인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표자는 하나의 체약당사자만을 대표할 수 있다.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appointed the delegation. The Assembly may ask the Organization to grant financi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dele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regarded as developing countries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r Least Developed Countries or that ar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UN총회 또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확립된 관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거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국가인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구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Tasks] The Assembly shall	(2)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i)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is Treaty;	(i) 본 조약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처리
(ii) establish Model International Forms, referred to in Article 25(1)b);	[(ii) 제25조 제1항 (b)에 언급된 국제표준서식의 제정
(iii) amend the Regulations;	(iii) 시행규칙의 개정
(iv)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date of application of each amendment referred to in item (iii);	(iv) (iii)호의 각 개정 적용일에 관한 조건의 규정
(v) monitor, at every ordinary sessi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f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v)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하여 매 정기 회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
(vi) request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particular to developing countries and	(vi)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사무국에 요청

원문	번역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vii)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appropriate to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vii) 본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기타 기능의 수행
(3) [Quorum] (a) One-half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shall constitute a quorum.	(3) [정족수] 당사국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if, in any session,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and are represented is less than one-half but equal to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the Assembly may make decisions but, with the exception of decisions concerning its own procedure, all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only if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 are fulfill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ommunicate the said decisions to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and were not represented and shall invite them to express in writing their vote or abstent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If, at the expiration of this period, the number of such members having thus expressed their vote or abstention attains the number of the members which was lacking for attaining the quorum in the session itself,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provided that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majority still obtains.	(b) (a)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서든 체약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수가 과반수 미만 이나, 1/3 이상인 경우 총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자체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모든 결정은 다음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대표자가 아닌 체약당사자에 해당 결정을 전달하고, 전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투표 또는 기 권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한다. 해당 기간이 만료 될 때 투표 또는 기권의 의사를 표명한 체약당 사자의 수가 회기 자체에서 의사정족수를 달성 하기에 부족한 체약당사자의 수를 달성하는 경 우, 해당 결정한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4) [Taking Decisions in the Assembly] (a) The Assembly shall endeavor to take its decisions by consensus.	(4) [총회에서의 의사결정] (a) 총회는 합의에 의 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Where a decision cannot be arrived at	(b)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

원문	번역
by consensus, the matter at issue shall be decided by voting. In such a case,	결로서 쟁점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i) each Contracting Party that is a State shall have one vote and shall vote only in its own name; and	(i) 국가인 각 계약당사자는 각기 한표를 가지며,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만 투표하여야 한다.
(ii)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participate in the vote, in place of its Member Stat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y to this Treaty.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In addition,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party to this Treaty is a Member State of another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at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icipates in that vote.	(ii) 정부간기구인 계약당사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본 조약의 계약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회원국 중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해당 정부간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본 조약의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이고 다른 정부간기구가 해당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정부간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5) [Majorities] (a) Subject to Article 25(2) and (3), the decisions of the Assembly shall require two-thirds of the votes cast.	(5) [다수결] (a)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2/3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b)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d majority is attained, only votes actually cast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b) 필요한 과반수 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투표한 표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권을 유효표로 보지 아니한다.
(6) [Sessions] The Assembly shall meet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nd,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Organization.	(6) [회기]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기총회와 같은 기간 및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총장의 소집에 따라 소집된다.
(7) [Rules of Procedure] The Assembly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7) [절차규칙] 총회는 임시회 소집규칙을 포함한 독자적인 절차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
including rules for the convocation of extraordinary sessions.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6 Assembly	Article 17 Assembly	Article 23 Assembly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조약과 관련한 총회의 역할, 총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PLT와 STLT에서도 동일 취지, 매우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27. 제27조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원문	번역
Article 27 International Bureau	제27조 국제사무국
(1) [Administrative Tasks]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is Treaty.	(1) [행정업무] (a) 국제사무국은 본 조약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b)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epare the meetings and provide the Secretariat of the Assembly and of such committees of experts and working groups as may be established by the Assembly.	(b)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그리고 총회에서 설치하는 전문가위원회와 실무반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 사무국으로서 기능한다.
(2) [Meetings Other than Sessions of the Assembly] The Director General shall convene any committee and working group established by the Assembly.	(2) [총회의 회기 외의 회의] 사무총장은 총회 설치한 위원회 및 실무반을 소집한다.
(3) [Role of the International Bureau in the Assembly and Other Meetings] (a) The Director General and persons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Assembly,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Assembly.	(3)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의 국제사무국의 역할] (a)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정한 자는 총회 및 총회에서 설치한 위원회와 실무반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b) The Director General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ex officio Secretary of the Assembly, and of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b)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총회 및 (a)호에서 언급된 위원회와 실무반에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4) [Conferences]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 Assembly, make the preparations for any revision conferences.	(4) [회의] (a)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b)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consult with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said preparations.	(b) 국제사무국은 위의 준비에 관하여, 기구의 회원국, 정부간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국내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c) The Director General and persons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c) 사무총장과 그가 지정하는 자는 개정회의에서의 논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원문	번역
take part,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the discussions at revision conferences.	
(5) [Other Task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arry out any other tasks assigned to it in relation to this Treaty.	(5) [그 밖의 업무] 국제사무국은 본 조약과 관련하여 이자신에게 주어진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7 International Bureau	Article 18 International Bureau	Article 24 International Bureau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27조는 국제사무국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PLT와 STLT에서도 동일 취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28. 제28조 개정 (Revision)

원문	번역
Article 28 Revision	제28조 개정
This Treaty may only be revised by a diplomatic conference. The convocation of any diplomatic conference shall be decided by the Assembly.	본 조약은 오직 외교회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모든 외교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정한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8 Revision	Article 19 Revision	Article 25 Revision or Amendment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28조는 조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약은 오직 외교회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외교회의의 소집은 총회에서 정함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29. 제29조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원문	번역
Article 29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제29조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Eligibility] The following entities may sign and,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and Article 28(1) and (3), become party to this Treaty:	(1) [자격] 다음의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이 조약에 서명할 수 있고, 제2항과 제3항 및 제28조 제(1)항과 제(3)항을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i)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in respect of which industrial designs may be registered or patented with its own Office;	(i)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행정청이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디자인(특허)를 허여할 수 있는 국가
(ii)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maintains an Office in which industrial designs may be registered with effect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constituting treaty of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pplies, in all its Member States or in those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designated for such purpose in the relevant application, provided that all the Member States of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i) 정부간기구로서, 그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모든 회원국, 또는 관련 출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일부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산업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행정청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간기구. 다만, 해당 정부간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iii)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in respect of which industrial designs may be registered only through the Office of another specified State that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iii)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회원국인 다른 특정한 국가의 행정청을 통해서만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iv)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in respect of which industrial designs may be registered only through the Office maintained by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which that State is a member;	(iv)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국가의 회원국이 되는 정부간기구가 운영하는 관청을 통해서만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v)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in respect of which industrial designs may be	(v)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일단의 회원국들에게 공통된 관청을 통해서만 산업디자인의

원문	번역
registered only through an Office common to a group of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2)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ent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deposit	(2)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다음을 기탁할 수 있다.
(i)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if it has signed this Treaty,	(i) 본 조약에 서명한 경우, 비준서
(ii) an instrument of accession, if it has not signed this Treaty.	(ii) 본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서
(3) [Effective Date of Deposit] The effective date of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3) [기탁의 효력발생일]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i) in the case of a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i),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 of that State is deposited;	(i) 제1항 (i)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ii) in the case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s deposited;	(ii) 정부간기구의 경우, 해당 정부간기구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iii) in the case of a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iii), the date on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 is fulfilled: the instrument of that State has been deposited and the instrument of the other specified State has been deposited;	(iii) 제1항 (iii)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 : 해당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고 다른 특정된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iv) in the case of a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iv), the date applicable under item (ii), above;	(iv) 제1항 (iv)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ii)에 의한 날
(v) in the case of a State member of a group of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v),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all the States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posited.	(v) 제1항 (v)에 언급된 일단의 회원국의 한 구성국인 경우, 일단의 회원국의 모든 구성국들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29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Article 20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Article 26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29조는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약은 국가 및 정부간 기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서명 여부에 따라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30. 제30조 발효 :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원문	번역
Article 30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제30조 발효 :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
(1) [Instrument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only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at are deposited by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29(1) and that have an effective date according to Article 29(3)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1) [고려되는 문서] 본 조의 목적상,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나 정부가기구에 의하여 기탁되고 그 효력발생일이 제29조 제(3)항에 따르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2)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15 States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9(1)(ii)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조약의 효력발생] 이 조약은 15개 국가 또는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정부간기구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Entry into Forc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ny entity not covered by paragraph (2) shall become bound by this Treaty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3) [이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의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 제2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본 조약에 기속된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0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Article 21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s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Article 28 Entry into Force; Effective Dates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30조는 발효: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사항으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의 목적상 제29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격을 가진 주체가 제출한 비준 또는 가입의 고려대상이 되며, 제출된 문서가 제29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한 날짜를 가져야 인정될 수 있음
- DLT는 15개국 (또는 조약 제29조 제1항 2호에 명시된 정부간 기구)이 비준 또는 가입서를 제출한 뒤 3개월 후에 발효됨. 최소한 15개의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조약에 참여해야 효력을 발휘함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합의를 보장하고 조약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조약이 발효된 후 가입하는 주체의 경우, 비준 또는 가입서를 제출한 후 3개월 후에 해당 주체에게 조약의 구속력을 갖게되는데, 이는 새로운 체약당사자들에게 준비시간을 제공하며, 조약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31. 제31조 유보 (Reservations)

원문	번역
Article 31 Reservations	제31조 유보
(1) [Reservation on Article 5(2)(b)]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declare through a reservation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5(2)(b), its applicable law at the date it becomes a party to this Treaty does not allow the applicant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o act for himself/her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1) [제5조제(2)항(b)호에 대한 예외] 어떠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예외를 선언함으로써, 제5조 제(2)항(b)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짜에 해당 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적용가능한 법이 해당 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영토에 거소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적, 상업적 법인설립이 없는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는 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2) [Reservations on Articles 7, 10(1), 16(2) and/or 19(2)]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ose applicable law at the date it becomes a party to this Treaty does not comply with Articles 7, 10(1), 16(2) and/or 19(2) may declare through a reservation that it shall not be bound by Articles 7, 10(1), 16(2), and/or 19(2).	(2) [제7조, 제10조(1), 제16조(2) 및/또는 제19조(2)에 대한 예외]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짜에 해당 국가나 정부 간 기구의 적용 가능한 법이 제 7조, 제10조(1), 제16조(2) 및/또는 제19조(2)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는 예외를 선언함으로써 제7조, 제10조(1), 제16조(2) 및/또는 제 19조(2)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할 수 있다.
(3) [Modalities]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shall be made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of the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king the reservation.	(3)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예외는 해당 예외를 선언하는 국가나 정부 간 기구의 이 조약 비준 또는 가입 문서에 첨부된 선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Withdrawal]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4) [철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예외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5) [Prohibition of Other Reservations] No	(5) [기타 예외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원문	번역
reservation to this Treaty other than the reservations allowed under paragraphs (1) or (2) shall be permitted.	서 허용된 예외를 제외한 다른 예외는 이 조약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1 Reservations (1) [Reservation on Article 5(2)(b)]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declare through a reservation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5(2)(b), its applicable law at the date it becomes a party to this Treaty does not allow the applicant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o act for himself/her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Article 23 Reservations (1) [Reservation]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declare through a reservation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6(1) shall not apply to any requirement relating to unity of invention applicable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rticle 29 Reservations (1) [Special Kinds of Mark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declare through a reservation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2(1) and (2)(a), any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3(1), 5, 7, 8(5), 11 and 13 shall not apply to associated marks, defensive marks or derivative marks. Such reservation shall specify those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3) [Modalities]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shall be made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2) [Modalities]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of the State or	(5) [Modalities]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2), (3) or (4) shall be made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of

DLT	PLT	STLT
of the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king the reserv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king the reservation.	the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king the reservation.
(4) [Withdrawal]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4) [Withdrawal]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6) [Withdrawal] Any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2), (3) or (4)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5) [Prohibition of Other Reservations] No reservation to this Treaty other than the reservations allowed under paragraphs (1) or (2) shall be permitted.	(5) [Prohibition of Other Reservations] No reservation to this Treaty other than the reservations allowed under paragraphs (1) shall be permitted.	(7) [Prohibition of Other Reservations] No reservation to this Treaty other than the reservations allowed under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permitted.

나. 해설

- 제31조는 유보에 관한 사항으로 유보는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의 선언으로 즉, 당사국이 조약상 의무의 일부를 제한하려는 선언임¹²⁵⁾
- 상당수의 조약에는 유보가 전혀 첨부되지 않으며,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약 자체가 유보에 관한 명문의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¹²⁶⁾ 반면, PLT 및 DLT에서는 더 많은 당사국의 가입을 고려하여 유보 조항을 두고 있음이 특징적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보조항이 조약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많은 회원국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유보조항의 활용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음

표 19 조약 제31조에 따른 유보조항(1)

- (제5조 제2항 b호) 계약당사자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의 단순 납부를 행정청에 직접 할 수 있다.

125) 정인섭, 「조약법 -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106면.

126) 정인섭, 「조약법 -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139면.

➔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짜에 해당 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적용가능한 법이 해당 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영토에 거소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적, 상업적 법인설립이 없는 출원인 또는 다른 이 해당사자의 경우 제5조 제2항 b호를 유보할 수 있음

표 20 조약 제31조에 따른 유보조항(1)

- (제7조) 공지에외기간
- (제10조 제1항)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 -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간에 대해 관련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비공개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2항) 후출원의 지연 - 선출원으로부터 우선권 주장(된)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만료일 이후이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인 경우, 계약당사자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2항)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자가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거나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러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 조약에 가입하는 날짜에 해당 국가나 정부 간 기구의 적용 가능한 법이 각 제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보할 수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유보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제5조 제2항 (b)호를 배제하고 조약에 가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① 국내법의 개정 후 조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② 국내법 개정 없이, 제5조 제2항 (b)호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고 조약에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

32. 제32조 조약의 탈퇴 (Denunciation of the Treaty)

원문	번역
Article 32 Denunciation of the Treaty	제32조 조약의 탈퇴
(1) [Notification] Any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is Treaty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1) [통보]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Effective Dat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It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to any application pending or any industrial design registered in respect of the denouncing Contracting Party at the time of the expiration of the said one-year period, provided that the denouncing Contracting Party m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aid one-year period, discontinue applying this Treaty to any registrat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at registration is due for renewal.	(2) [효력발생일]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1년의 기간의 만료시점에 조약을 탈퇴하는 체약당사자에 계류 중인 출원 또는 해당 국가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본 조약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조약을 탈퇴하는 체약당사자는 상기 1년이 기간의 만료 후에 어떠한 등록에 대해서도 이 조약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2 Denunciation of the Treaty	Article 24 Denunciation of the Treaty	Article 30 Denunciation of the Treaty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32조는 조약의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조약의 탈퇴 절차와 유예기간 동안의 권리보호를 명확히 규정하여, 탈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탈퇴의 효력발생 시점)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denunciation)한 국가는 탈퇴 의사를 담은 통지를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 (탈퇴가 미치는 영향) 탈퇴 선언한 국가의 경우, 1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미 진행 중인 산업디자인 출원(application pending)이나 등록(registered)에 대해서는 조약이 여전히 적용됨
-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탈퇴 국가(denouncing Contracting Party)는 조약 갱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해당 조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33. 제33조 조약의 언어 : 서명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원문	번역
Article 33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제33조 조약의 언어 : 서명
(1) [Original Texts; Official Texts] (a) This Treaty shall be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1) [원문 : 공식본] (a) 본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서명된 단일원본이며, 모든 공식본은 동일하게 인정된 정본이다.
(b) An official text in a languag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at is an official languag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aid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interested Contracting Party.	(b)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서 (a)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언어로 된 공식본은 사무총장이 그 체약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2) [Time Limit for Signature] This Treaty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for one year after its adoption.	(2) [서명 기한] 본 조약은 채택 후 1년간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3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Article 25 Languages of the Treaty Article 26 Signature of the Treaty	Article 31 Languages of the Treaty; Signature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33조는 조약의 언어에 관한 사항으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약의 공식 원문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언어는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equal authenticity)고 규정. 이는 국제적 조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권의 국가들이 조약을 공평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특정 조약의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y)의 공식 언어가 있다면 해당 언어로 된 공식본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해당 국가 및 관련 이해국들과 협의하여 해당 언어로 된 공식 번역문을 확정할 수 있음. 이는 조약 당사국의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해당 조약을 더 많은 국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34. 제34조 기탁처 (Depositary)

원문	번역
Article 34 Depositary	제34조 기탁처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Treaty.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처이다.

가. 타 조약과의 비교

DLT	PLT	STLT
Article 34 Depositary	Article 27 Depositary; Registration	Article 32 Depositary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이하 조문 생략

나. 해설

- 제34조는 기탁처에 관한 사항으로 PLT와 STLT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II. Regulation의 분석

1. 제1조 정의(Abbreviated Expressions)

원문	번역
Rule 1 Abbreviated Expressions	제1조 정의
(1) [Abbreviated Expressions Defin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1) [이 규칙에 정의된 약칭] 이 규칙의 목적상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i) "Treaty" means the Design Law Treaty;	(i) "조약"이란 「디자인법조약」을 말한다.
(ii) "Article" refers to the specified Article of the Treaty;	(ii) "조"란 조약에 명시된 조를 말한다.
(iii) "Locarno Classification" means the classification established by 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signed at Locarno on October 8, 1968, as revised and amended;	(iii) "로카르노 분류" :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국제 분류인,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iv) "exclusive license" means a license which is only granted to one licensee and which excludes the holder from using the industrial design and from granting licenses to any other person;	(iv) "전용실시권" : 실시권이 오직 한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디자인권자가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고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실시권을 말한다.
(v) "sole license" means a license which is only granted to one licensee and which excludes the holder from granting licenses to any other person but does not exclude the holder from using the industrial design;	(v) "독점실시권" : 실시권이 오직 한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디자인권자가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실시권을 말한다.
(vi) "non-exclusive license" means a license which does not exclude the holder from using the industrial design or from granting licenses to any other person.	(vi) "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가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실시권을 말한다.
(2) [Abbreviated Expressions Defined in the Treaty] The abbreviated expressions defined in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Treaty shall have the same meaning	(2) [이 조약에 정의된 약칭] 이 조약의 목적상 제1조에 정의된 약칭은 이 규칙의 목적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원문	번역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가. 해설

-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항을 해석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조약 제1조에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약어, 해설 등을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조에서 추가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나.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2. 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Application)

원문	번역
Rule 2 Details Concerning the Application	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1) [Further Requirements Under Article 4]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4,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tion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1) [조약 제4조에 따른 추가 조건] 조약 제4조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계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of th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to which belongs the product which incorporates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의 사용과 관련된 물품이 속한 로카르노 분류
(ii) a claim;	(ii) 청구항(특허)
(iii) a statement of novelty;	(iii) 신규성에 대한 진술
(iv) a description;	(iv) 디자인 설명
(v)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v)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
(vi) a statement that the creator believes himself/ herself to be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vi) 창작자 자신이 진정한 산업디자인 창작자라는 진술
(vii)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a statement of assignment or,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other evidence of the transfer of the design to the applicant admitted by the Office;	(vii)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양도증명서 또는, 출원인에게 디자인이 이전되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하는 기타 증거
(viii) where the applicant is a legal entity, the legal nature of that legal entity and the State, and, where applicable, the territorial unit within that State, under the law of which the said legal entity has been organized;	(viii)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근거법에 따른 법인의 법적 성격과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ix) the name of a State of which the applicant is a national if he/she is the	(ix) 출원인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적,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거소지를 두고

원문	번역
national of any State,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applicant has his/her domicile, if any, and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applicant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f any;	있는 경우 그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
(x) an indication of any pri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other information, of which the applicant is aware,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x) 산업디자인의 등록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써,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이전의 출원/등록, 또는 기타 정보의 기재
(x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maintain the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for a period of time, a request to that effect;	(xi) 출원인이 일정기간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신청
(xii) where the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an indication of th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included;	(xii) 출원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수
(xiii) an indication of the term of protection for which the application is filed;	(xiii) 출원의 보호기간
(xiv)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payment of a fe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evidence that the payment was made;	(xiv) 계약당사자가 출원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거
(xv) where applicable, an indication of partial design;	(xv) 해당하는 경우, 부분디자인의 기재
(xvi) where applicable, a request for earlier publication.	(xvi) 해당하는 경우, 조기 공개 신청
(2) [Requirements in Case of Divisional Application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where an application is to be treated as a divisional application, the application contain the following:	(2) [분할출원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분할 출원인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to that effect;	(i) 분할 출원의 취지 기재
(ii) the number and filing date of the initial application.	(ii)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
(3) [Partial Design] A Contracting Party	(3) [부분 디자인]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률에서

원문	번역
shall, if the applicable law allows, permit the application to be directed to a design embodied in a part of an article or product.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물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구현된 디자인 대한 출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2조는 조약 제4조와 관련하여,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약 제4조에 명시된 기본 요구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각 목으로 열거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이를 통하여 조약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i)는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신청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클래스 표시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선택적 조항일 뿐,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로카르노 분류의 분류군 표시를 요구해야할 의무는 없음¹²⁷⁾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ii)는 특허법상의 청구항을 의미함. 이 조항은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경우 특허법 내에서 산업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¹²⁸⁾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iv)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설명의 형식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설명에는 일부 국가에 따라 간략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¹²⁹⁾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vi)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인 경우와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경우 모두 그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¹³⁰⁾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vii)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아닌 경우, 계약당사자는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에게 산업디자인을 이전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증거, 즉 양도증서 또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그 밖의 양도의 증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vii)는 출원인이 양도 증서 이외의 다른 형태의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거는 행정청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따라서 행정청

127) Note on Regulation R2.01.

128) Note on Regulation R2.02.

129) Note on Regulation R2.03.

130) Note on Regulation R2.04.

이 양도 증서 외에 다른 형태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양도증서를 제출하여야 함¹³¹⁾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x)를 통하여 행정청은 산업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관련 예외기간 내에 출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불필요하게 좁히지 않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던 “신규성” 대신 “등록적격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¹³²⁾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xiv)의 “증거”라는 용어는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의 사본을 포함하지만 모든 형태의 납부를 포함하도록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¹³³⁾

나. 관련 국내법

시행규칙의 규정	관련 국내법	
신규성에 대한 진술 (reg§2(1)(iii))	법 §37⑤ 1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를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주장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작성, 첨부하도록 함
디자인에 대한 설명 (reg§2(1)(iv))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 용도를 기재할 수 있음
창작자의 신원 (reg§2(1)(v))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창작자】의 구체적인 기재요령
창작자 자신이 진정한 산업디자인의 창작자라는 진술(reg§2(1)(vi))	-	출원서에 별도기재하진 않으나, 무권리자의 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대상이 됨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진정하게 -양도되었음에 대한 증거(reg§2(1)(vii))	-	출원서에 별도기재하진 않으나, 무권리자의 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대상이 됨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성격 및 소재지 (reg§2(1)(viii))	법 §37① 1호	
출원인이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명 (reg§2(1)(ix))	-	
산업디자인의 비공개유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취지의 신청(reg§2(1)(xi))	디자인등록출원서/ 법 §43	【그 밖의 사항】란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131) Note on Regulation R2.05.

132) Note on Regulation R2.06.

133) Note on Regulation R2.09.

		내용을 기재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의 개수(reg§2(1)(xii))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의 수】 복수디자인의 경우 최대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기재
출원의 보호기간 (reg§2(1)(xiii))	-	
출원관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의 증거(reg§2(1)(xiv))	디자인등록출원서	【수수료】 또는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 감면이나 면제 사유의 기재
(해당시) 부분디자인(reg§2(1)(xv))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을 기재
(해당시) 우선공개 신청(reg§2(1)(xvi))	디자인등록출원서/ 법 §52	【그 밖의 사항】란에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기재

다.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

3. 제3조 도면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원문	번역
Rule 3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제3조 도면에 관한 세부사항
(1) [Form of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 The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shall,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be in the form of:	(1) [도면 형식] (a) 도면은 다음의 형식 가운데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다.
(i) photographs;	(i) 사진
(ii) graphic reproductions;	(ii) 그래픽 도면
(iii) any other visual representation admitted by the Office;	(iii) 기타 행정청에 의해 인정된 시각적 표현
(iv) a combination of any of the above,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iv)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기 사항의 결합
(b) The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may,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be in color or in black and white.	(b) 도면은 출원인 선택에 따라 컬러 또는 흑백으로 표현될 수 있다.
(c) The industrial design shall be represented alone,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matter.	(c) 도면은 다른 요소 없이 단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Particulars Concerning Representation] Notwithstanding paragraph (1)(c), the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may include:	(2) [도면에 관한 사항] 제(1)항제(c)호에도 불구하고, 도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i) matter that does not form part of the claimed design if it is shown by visual means such as dotted or broken lines and/or, if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identified as such in the description;	(i)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점선 또는 파선과 같은 시각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거나 디자인 설명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
(ii) shading, to show the contours or volume of a three-dimensional design.	(ii) 3차원 디자인의 부피감 또는 윤곽을 보여주기 위한 음영
(3) [Views] (a) The industrial design may,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be represented by one view that fully discloses the	(3) [도면의 표시] (a) 산업디자인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 디자인을 완전히 보여주는 하나의 도면 또는 여러 개의 다른 도면으로 표시할

원문	번역
industrial design, or by several different views that fully disclose the industrial design.	수 있다.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dditional, specific views may be required by the Office where such views are necessary to fully show the product or products that incorpora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However, additional views disclosing new matter affecting the industrial design, which are not derivable from the original view or views, do not have to be admitted.	(b) 제(a)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들)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도면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도면에서 도출되지 않고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을 나타내는 추가 도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Number of Copies of Representation] No more than one copy of any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may be required where the application is filed electronically, and no more than three copies where the application is filed on paper.	(4) [도면 사본의 수] 전자적으로 출원시 1개 이상의 도면 사본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출원시 3개 이상의 도면 사본을 요구할 수 없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출원인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 도면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사진, 도면과 같은 그래픽 복제물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산업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음을 규정¹³⁴⁾
- “기타 행정청이 인정하는 시각적 표현”이라는 용어는 동영상이나 컴퓨터 애니메이션 표현과 같은 다른 형태의 표현을 의미하며, 나아가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개발될 수 있는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기 위한 것임. 또한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표본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단 산업디자인의 표현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항상 시각적이어야 함¹³⁵⁾

134) Note on Regulation R3.01..

135) Note on Regulation R3.02..

-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은 외관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함. 특정 디자인을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디자인의 여러 관점이 필요할 수 있지만, 3차원 디자인이라도 예를 들어 투시도와 같은 단일 관점만으로 완전히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¹³⁶⁾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i)에 따라, 출원인은 산업디자인의 도면에 산업디자인 자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즉 출원인은 산업디자인의 표현에 점선 또는 파선으로 표시하거나, 설명을 통해 보호가 청구되지 않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¹³⁷⁾ 그러나 이 조항은 보호가 요청되는 실선으로 표시된 사항이 실제로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실선으로 표시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¹³⁸⁾
-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산업디자인을 완전히 공개하는 데 필요한 도면의 수와 유형을 사례별로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출원인은 더 이상 출원하는 여러 관할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도면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 동시에 이 조항은 행정청이 산업디자인을 통합한 제품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추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도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¹³⁹⁾
- 시행규칙 제3조는 출원인이 제출하거나 행정청이 게시할 수 있는 최대 도면의 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님. 도면의 특정 개수를 고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금방 시대에 뒤쳐진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예를 들어, 현재는 추가 비용 없이 게재할 수 있는 도면의 개수가 제한적일지라도, 새로운 재현 기술(reproduction methods)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곧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음. 또한, 미래에는 더 발전된 재현 기술 덕분에 도면의 개수를 줄이더라도 복잡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기술발전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특정 도면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¹⁴⁰⁾ 최대 도면의 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 법률에 제한을

136) Note on Regulation R3.03.

137) Note on Regulation R3.04.

138) Note on Regulation R3.05.

139) Note on Regulation R3.06. - R3.07.

140) Note on Regulation R3.09.

도입하고 최대 도면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최대 도면의 수는 매우 복잡한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디자인이 기존의 복제 기술에 따라 완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¹⁴¹⁾

-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전자출원의 방식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전자출원은 경우에 따라 복제본 또는 복제물의 사본이 하나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한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WIPO 설문은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SCT 회원국(72%)이 1~3부 사이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었음¹⁴²⁾ 또한, SCT에서 논의한 결과, 1부를 초과하는 도면의 사본을 받으면 행정청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행정청에서 3부 이상의 도면 사본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원인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출원서에 각 복제본의 사본 수를 제한하면 출원서 작성 시 간소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¹⁴³⁾

나.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1) Note on Regulation R3.10.

142) SCT/19/6 참조

143) Note on Regulation R3.11.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서는 출원디자인에 관한 서지사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면 등을 포함. 출원서 및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창작자 및 출원일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
- (디자인도면) 디자인 도면은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함. 단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다.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4. 제4조 대리인,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원문	번역
Rule 4 Details Concerning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제4조 대리인,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1)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5(4); Power of Attorney]	(1) [조약 제5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 위임장]
(a) Whenever a Contracting Party allows or requires an applicant, a holder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to be represented by a representative before the Office, it may require that the representative be appointed in a separate commun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wer of attorney”) indicating the name of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s the case may be, as well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 대리인이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이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뿐만 아니라,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도 기재되어야 한다.
(b) The power of attorney may relate to one or more applications and/or registrations identified in the power of attorney or, subject to any exception indicated by the appointing person, to all existing and future applications and/or registrations of that person.	(b) 위임장에서 하나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이 확인되거나, 임명자가 표시한 모든 예외에 따른 경우, 위임장은 임명자의 현존 또는 미래의 모든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계 될 수 있다.
(c) The power of attorney may limit the powers of the representative to certain acts.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power of attorney under which the representative has the right to withdraw an application or to surrender a registration contain an express indication to that effect.	(c) 위임장은 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특정 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출원을 철회하거나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위임장에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Time Limit Under Article 5(6)]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5(6) shall be not	(2) [조약 제5조 제6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5조 제(6)항에 따른 기한은,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원문	번역
less tha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that Article where the address of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s o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aking the notification, and not less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where such address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계약당사자 영토 내에 있는 경우 보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주소가 계약당사자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보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Evide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evidence be filed with the Office where the Office may reasonably doubt the veracity of any indication contained in any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증거] 행정청이 제(1)항에 따른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한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a호는 PLT 제7조 제2항의 접근 방식 대신 STLT 제4조 제3항 a호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음. 이 조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출원서에는 대리인 선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위임장에는 출원인,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한편 위임장에 요구되는 요소는 STLT 제4조 제3항 a호가 아닌 PLT 규칙 제7조 제2항 a호 (i)를 모델로 하고 있음¹⁴⁴⁾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b호 및 c호는 STLT 제4조 제3항 b호 및 c호에 근거함. 여기에는 여기에는 대리인 선임 방식 및 위임장의 내용에 관한 허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용적 특징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c호는 자국 법률에서 신청의 철회 또는 등록의 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¹⁴⁵⁾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대리인을 임명하는 사람의 주소가 해당 국가의 영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 두 가지로 기간 제한을 구분하고 있음. 이

¹⁴⁴⁾ Note on Regulation R4.01.

¹⁴⁵⁾ Note on Regulation R4.02.

러한 구분의 이유는 특히 위임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는 당사국의 영토에 주소가 없는 경우 최소 1개월의 기한은 너무 짧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구분은 STLT 규칙 제4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¹⁴⁶⁾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5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146) Note on Regulation R4.03.

5.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Filing Date)

원문	번역
Rule 5 Details Concerning Filing Date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6(4) shall be not less tha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that Article.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은 행정청이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5조는 조약 제6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누락된 출원일 요건을 준수하도록 1개월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1개월이라는 기한은 전자출원 등과 관련하여 모든 출원인이 통지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과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행위들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임. 모든 계약당사국은 누락된 출원일 요건을 준수하도록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¹⁴⁷⁾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6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¹⁴⁷⁾ Note on Regulation R5.01.

6.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Publication)

원문	번역
Rule 6 Details Concerning Publication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The minimum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0(1) shall be six months from the filing date.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최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5조는 조약 제10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에서 비공개 최소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6개월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특허청은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산업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6개월이라는 최소 기간은 출원인의 비밀 유지에 대한 이익과 다른 당사자 간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당사자들은 보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디자인이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음¹⁴⁸⁾
- 6개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SCT/SC/3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제안에 따른 것임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0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다.쟁점 및 후속과제

-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0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¹⁴⁸⁾ Note on Regulation R6.01.

7. 제7조 서류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Communications)

원문	번역
Rule 7 Details Concerning Communications	제7조 서류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1) [Details Concerning Article 12(3)]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ddress for correspondence referred to in Article 12(3)(i) and the address for service referred to in Article 12(3)(ii) be in a territory prescribed by that Contracting Party.	(1) [조약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 (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2조제(3)항 제(i)목에 따른 교신용 주소와 제12조제(3)항 제(ii)목에 따른 송달용 주소가 계약당사자가 규정한 영토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nclude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contact details in any communication:	(b)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연락처에 대해,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 telephone number;	(i) 전화번호
(ii) a telefacsimile number;	(ii) 팩스번호
(iii) an email address.	(iii) 이메일 주소
(2) [Indications Accompanying Signature of Communication on Paper]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signature of the natural person who signs be accompanied by:	(2) [서면 서류제출시 서명 기재] 계약당사자는 자연인의 서명이 다음과 같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in letters, of the family or principal name and the given or secondary name or names, of that person or, at the option of that person, of the name, or names, customarily used by the said person;	(i) 서명인의 선택에 따라, 서명인의 성과 이름, 또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문자로 기재
(ii) an indication of the capacity in which that person signed, where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communication.	(ii) 제출서류에서 서명인의 자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그 서명인의 자격에 대한 기재
(3) [Date of Signing] A Contracting Party	(3) [서명일]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서명일을 기재

원문	번역
may require that a signature be accompanied by an indication of the date on which the signing was effected. Where that indication is required, but is not supplied, the date of signing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n which the communication bearing the signature was received by the Office or, if the Contracting Party so allows, a date earlier than the latter date.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재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서명일은 행정청에 서명된 서류가 접수된 때, 또는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접수한 날 이전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4)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Where a communication to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s on paper and a signature is required, that Contracting Party:	(4) [서면 서류제출시 서명]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서명된 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서명을 요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한다.
(i) accompanied by a letter identifying that earlier transmission; and	(i) 제(Ⅲ)목의 요건에 따른 자필 서명의 허용
(ii) may permit, instead of a handwritten signature, the use of other forms of signature, such as a printed or stamped signature, or the use of a seal or of a bar-coded label;	(ii) 자필 서명 대신 다른 형식의 서명 허용 (인쇄·스탬프 서명, 도장·바코드 라벨 등)
(iii) may, where the natural person who signs the communication is a national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nd such person's address is in its territory, or where the legal entity on behalf of which the communication is signed is organized under its law and has either a domicile 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require that a seal be used instead of a handwritten signature.	(iii) 제출서류에 서명한 자연인이 계약당사자 국민이고 계약당사자 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서명한 법인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계약당사자 내에 영업소의 주소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A	(5) [서면 제출서류의 서명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등] 조약 제12조제(4)항제(b)호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출원 철회 또는 등록 포

원문	번역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attestation, notarization,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other certification of any signature of a communication on paper, under Article 12(4)(b), if the communication concerns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or the surrender of a registration.	기와 관련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또는 기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Signature of Communications on Paper Filed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A Contracting Party that provides for communications on paper to be filed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shall consider any such communication signed if a graphic or other representation of a signature accepted by that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 (4) appears on the communication as received.	(6)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서명]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허용된 그래픽 또는 다른 표현으로 서명된 서류에 대하여 서명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7) [Original of a Communication on Paper Filed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A Contracting Party that provides for communications on paper to be filed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may require that the original of any such communication be filed with the Office:	(7)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원본]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 모두를 준수하여 그 서류의 원본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ccompanied by a letter identifying that earlier transmission; and	(i) 이전의 서류제출을 증명하는 서신 첨부
(ii) within a time limit which shall be at least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d the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ii) 행정청이 전자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내에 원본 제출
(8) [Authentication of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A Contracting Party that permits the filing of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form may require that any such communication be authenticated through a	(8)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인증] 전자문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전자문서가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문	번역
system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s prescribed by that Contracting Party.	
(9) [Date of Receipt]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ceipt of a document or the payment of a fee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receipt by or payment to the Office in cases in which the document was actually received by or payment was actually made to:	(9) [접수일]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기관에 실제 서류가 접수된 때, 또는 수수료가 납부된 때 가운데 언제를 접수일로 정할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i) a branch or sub-office of the Office;	(i) 행정청의 지사 또는 지점
(ii) a national Office on behalf of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i) 계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일 경우, 그 계약당사자 행정청을 대리하는 국가 기관
(iii) an official postal service;	(iii) 우체국
(iv) a delivery service, or an agency, specified by the Contracting Party;	(iv) 계약당사자가 특정한 배송 업체
(v) an address other than the nominated address(es) of the Office.	(v) 행정청의 지정주소 이외의 주소지
(10) [Electronic Filing] Subject to paragraph (9), where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filing of a communication in electronic form or by electronic means of transmittal and the communication is so filed,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of that Contracting Party receives the communication in such form, or by such means, shall constitu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10) [전자문서]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제출된 경우, 제 (9)항에 따라 서류를 접수한 날이 계약당사자 행정청의 접수일이 된다.
(11) [Indications Under Article 12(7)]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11) [조약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류 기재사항] (a) 계약당사자는 서류제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 indic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ii) indicate the number of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to which it relates;	(ii) 관련디자인 출원시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 번호

원문	번역
(iii) contain, where the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s registered with the Office, the number or other indication under which he/she is so registered.	(iii)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등록번호 또는 기타 표시사항
(iv) contain, where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payment of a fee in respect of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ndication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to collect fees, including the amount of the fee and its method of payment.	(iv)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때 계약당사자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경우, 수수료 비용 및 지불 방식을 포함하여 당해 행정청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표시사항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mmunication by a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s of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contain:	(b) 계약당사자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ii) a reference to the power of attorney on the basis of which the representative acts;	(ii) 위임장
(iii) where the representative is registered with the Office, the number or other indication under which he/she is registered.	(iii) 대리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번호 또는 기타 표시사항

가. 해설

- 시행규칙 제7조는 조약 제12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STLT 규칙 제6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제11항의 경우는 PLT 규칙 제10조 제1항을 모델로 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계약당사국이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출원 철회 또는 등록 포기과 관련 있고, 계약당사국의 법률에서 그러한 증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서명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본 조항의 허용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법률이 그러한 증명을 규정하지 않거나 출원 철회 또는 등록 포기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¹⁴⁹⁾ 이때 서명에 대

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유연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당성이 있음¹⁵⁰⁾

-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각 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음. 예컨대 자연인의 경우, 성명을 성 또는 본명, 이름과 또는 중간 이름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 법인의 전체 공식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¹⁵¹⁾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7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2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쟁점 및 후속과제

-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2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49) Note on Regulation R7.02.

150) Note on Regulation R7.03.

151) Note on Regulation R7.06.

8. 제8조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특정 (Identification of an Application Without its Application Number)

원문	번역
Rule 8 Identification of an Application Without its Application Number	제8조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특정
(1) [Manner of Identification] Where it is required that an application be identified by its application number, but such a number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identified if the following is supplied:	(1) [특정방법] 출원이 그 출원번호에 의하여 특정되도록 요구되지만, 그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다음 사항이 제공될 경우 특정되는 것으로 본다.
(i) the provisional application number, if any, given by the Office; or	(i) 행정청에 의하여 임시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 그 임시출원번호, 또는
(ii) a copy of the application; or	(ii) 출원서 사본 또는
(iii) a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ccompanied by an indication of the date on which,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applicant or the representative,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e Office, along with any identification number given to the application by the applicant or the representative.	(iii) 산업디자인 도면에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관청에 의하여 출원서가 수령된 날짜 및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서에 기재한 고유번호
(2) [Prohibition of Other Requirements] No Contracting Party may demand that requiremen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be complied with in order for an application to be identified where its application number has not yet been issued or is not known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2)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가. 해설

- 이 조항은 산업디자인 출원서의 식별에 관한 규칙을 다루며,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그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를 명

확히 규정하고 있음

- (출원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식별 기준)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이를 모르는 경우, ① 임시 출원번호((Provisional Application Number)나 ② 출원서 사본(Copy of the Application), 또는 ③ 디자인 도면 또는 이미지(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를 통하여 출원서를 식별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원서를 식별하는 데 있어, 제1항에서 언급된 요건 이외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국가나 기구 등이 동일한 기준으로 출원 식별을 허용하여야 함을 의미
- 이 조항은 출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출원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간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장벽을 방지하고 있음. 즉 이 조항은 출원번호 없이도 출원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 유사한 사례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출원에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디자인 도면과 기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나. 관련 국내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 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9. 제9조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newal)

원문	번역
Rule 9 Details Concerning Renewal	제9조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2), the period during which any request for renewal may be presented, and any renewal fee may be paid, shall commence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renewal is due and shall end, at the earliest, six months after that date. If the request for renewal is presented, or the fee is paid,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newal is due, the acceptance of the request for renewal and the payment of the fee may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a surcharge.	조약 제13조제(2)항의 목적상 갱신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시작하여, 갱신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만약 갱신 만료일 이후에 갱신 신청 또는 갱신 수수료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및 수수료 납부에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9조는 조약 제13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과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갱신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이 유예 기간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¹⁵²⁾ 권리의 지속을 위한 수수료 납부 유예 기간은 이미 파리협약 제5조 b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DLT의 경우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임¹⁵³⁾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9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3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152) Note on Regulation R9.01.

153) Note on Regulation R9.02.

10.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원문	번역
Rule 10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1) [Requirements Under Article 14(1)]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quest referred to in Article 14(1):	(1) [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 (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i)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older;	(i)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ii) contain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an extension of a time limit is requested, and an identification of the time limit in question.	(ii)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연장되는 기한의 특정
(b) Where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a time limit is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the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l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be complied with at the same time as the request is filed.	(b) 기한 만료 후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행정절차의 모든 요건이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준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Period and Time Limit Under Article 14(1)] (a) The period of extension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4(1) shall be not less than on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un-extended time limit.	(2) [조약 제14조제(1)항의 기간 및 기한] (a) 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b)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4(1)(ii) shall expire not earlier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un-extended time limit.	(b) 조약 제14조제(1)항제(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Requirements Under Article 14(2)(i)]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quest referred to in Article 14(2)(i):	(3) [조약 제14조제(2)항제(i)목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제(2)항제(i)목에서 언급된 기한의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i)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older;	(i)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ii) contain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ii)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는 취

원문	번역
relief in respect of non-compliance with a time limit is requested, and an identification of the time limit in question.	지의 기재 및 연장되는 기한의 특정
(4) [Time Limit for Filing a Request Under Article 14(2)(ii)]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4(2)(ii) shall expire not earlier than two months after a notification by the Office that the applicant or holder did not comply with the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4) [조약 제14조제(2)항제(ii)목에 따른 신청서 제출 기한] 조약 제14조제(2)항제(ii)목에 따른 기한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행정청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Exceptions Under Article 14(3)]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under Article 14(1) or (2) to grant:	(5) [조약 제14조제(3)항에 따른 예외]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요구받지 않는다.
(i) a second, or any subsequent,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which relief has already been granted under Article 14(1) or (2);	(i)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구제된 기한의 2차 또는 후속 구제
(ii) relief for filing a request for a relief measure under Article 14(1) or (2) or a request for reinstatement under Article 15(1);	(ii)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에 대한 구제
(ii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the payment of a renewal fee;	(iii)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에 대한 구제
(i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before a board of appeal, or other review body, constituted in the framework of the Office;	(iv) 행정청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기관의 절차 기한의 구제
(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inter partes proceedings;	(v) 당사자 간 절차 기한의 구제
(v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6(1) or (2).	(vi) 조약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기한의 구제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0조의 전체의 내용은 PLT 규칙 제12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0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4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0조에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4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1.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Under Article 15)

원문	번역
Rule 11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Under Article 15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1) [Requirements Under Article 15(1)(i)]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quest referred to in Article 15(1)(i)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older.	(1) [조약 제15조제(1)항제(i)목에 따른 요건] 계약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제(i)목의 신청에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Time Limit Under Article 15(1)(ii)] The time limit for making a request, and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15(1)(ii), shall be the earlier to expire of the following:	(2) [조약 제15조제(1)항제(ii)목의 기한] 조약 제15조제(1)항제(ii)목에 따른 신청 및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i) not less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moval of the cau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i) 해당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개월 이상
(ii)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or, where a request relates to non-payment of a renewal fee,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of grace provided under Article 5bis of the Paris Convention.	(ii) 해당 절차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또는 갱신 수수료 미납과 관련된 신청의 경우 파리협약 제5조의2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3) [Exceptions Under Article 15(2)] The excep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5(2) are failure to comply with a time limit:	(3) [조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외] 조약 제15조제(2)항에서 언급된 예외사항은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i) for making a request for relief under Article 14 (1) or (2) or a request for reinstatement under Article 15(1);	(i)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기한
(ii) for an action before a board of appeal, or other review body, constituted in the	(ii) 행정청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기관의 절차 기한

원문	번역
framework of the Office;	
(iii) for an action in inter partes proceedings;	(iii) 당사자 간 절차 기한
(iv) for filing a declaration which,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may establish a new filing date for a pending application;	(iv)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일을 부여할 수 있는 선언서의 제출 기한
(v) referred to in Article 16(1) or (2).	(v) 조약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1조는 조약 제15조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PLT 규칙 제13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i)에서 규정한 최소 기한은 PLT 규칙 제13조 제2항 (i)에도 규정되어 있음
-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iv)에 따라 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류 중인 출원의 새로운 출원일을 설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진술서의 제출에 관한 구제수단을 배제할 수 있음. 이는 해당 정정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의 법률이 계류 중인 출원의 정정일을 새로운 출원일로 하는 제도를 규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일을 정해야 하며 이 같은 사항은 STLT 규칙 제9조 제4항 (vii)에도 동일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음¹⁵⁴⁾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5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5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¹⁵⁴⁾ Note on Regulation R11.03.

12.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nd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Under Article 16)

원문	번역
Rule 12 Details Concerning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nd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Under Article 16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1) [Requirements Under Article 16(1)(i)]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quest referred to in Article 16(1)(i) be signed by the applicant.	(1) [조약 제16조제(1)항(i)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6조제(1)항(i)목에 따른 신청서에 출원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Time Limit Under Article 16(1)(ii)]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6(1)(ii) shall not be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or, where the correction or addition would cause a change in the priority date, six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as so changed, whichever six-month period expires firs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uch request may be submitted until the expiration of two months from the filing date.	(2) [조약 제16조제(1)항(ii)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6조제(1)항제(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 우선일이나 변경된 우선일 중 이른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3) [Exception]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obliged to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16(1), where the request referred to in Article 16(1)(i) is received after the substantiv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has been completed.	(3) [예외]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6조 제1항(i)의 청구가 실체심사 이 후 접수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청구의 정정 또는 추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Time Limits Under Article 16(2)] The time limits referred to in Article 16(2), introductory part, and Article 16(2)(ii) shall expire not less tha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ority period expired.	(4) [조약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14조제(2)항 전문 및 제16조제(2)항(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우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Requirements Under Article 16(2)(i)] A	(5) [조약 제16조제(2)항(i)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

원문	번역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 request referred to in 16(2)(i):	자는 조약 제16조제(2)항(i)에서 언급된 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be signed by the applicant; and	(i) 출원인에 의해 서명되었을 것
(ii) be accompanied, where the application did not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by the priority claim.	(ii)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 청구를 포함할 것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2조는 조약 제16조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PLT 규칙 제14조를 모델로 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6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6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3. 제13조 실시권·담보권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담보권 등록의 변경·취소 신청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or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원문	번역
Rule 13 Detail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or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or a Security Interest	제13조 실시권·담보권 등록 기록, 또는 실시권·담보권 등록의 변경·취소 기록에 관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1) [Content of Request]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e under Article 17(1) or (6)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1) [신청내용] (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권 등록 신청이, 다음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i)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ii) where the holder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ii)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iii) where the holder has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ch address;	(iii) 권리자가 송달 주소 또는 교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소
(iv) the name and address of the licensee;	(iv)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v) where the licensee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v) 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vi) where the licensee has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ch address;	(vi) 실시권자가 송달 주소 또는 교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소
(vii) where the licensee is a legal entity, the legal nature of that legal entity and the State, and, where applicable, the territorial unit within that State, under the law of which the said legal entity has been	(vii) 실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 및 설립 국가명, 그리고 가능한 경우 법인이 설립된 행정지역명

원문	번역
organized;	
(viii) the name of a State of which the licensee is a national, if he/she is the national of any State,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licensee has his/her domicile, if any, and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licensee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f any;	(Ⅷ) 실시권자가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국가명, 실시권자가 자신의 거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그리고 만약 실시권자가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명
(ix)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industrial design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icense;	(ix)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번호
(x) where the license is not granted in respect of all the industrial designs contained in a registration, the industrial design number(s) for which the license is granted;	(x) 등록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실시권이 부여되지는 않은 경우, 실시권이 부여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xi) whether the license is an exclusive license, a non-exclusive license or a sole license;	(xi) 실시권이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독점실시권인지 여부
(xii) where applicable, that the license concerns only a part of the territory covered by the registration, together with an explicit indication of that part of the territory;	(xii) 실시권이 등록에 의해 일부 지역에만 관련 있는 경우, 그 일부 지역에 대한 명시적 기재
(xiii) the duration of the license.	(xiii) 실시권의 기간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amendment 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under Article 18(1)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b) 조약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권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아래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the indications specified in items (i) to (ix) of subparagraph (a);	(i) 제(a)호의 제(i)목 내지 제(ix)목까지 명시된 기재사항
(ii)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mendment to be recorded or an indication that cancellation is to be recorded.	(ii) 등록될 변경사항의 성격과 범위, 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
(2) [Supporting Documents for Recording of	(2) [실시권 등록을 위한 첨부서류]

원문	번역
a License]	
(a) Where the license is a freely concluded agreement,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e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following:	(a)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신청에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 copy of the agreement, which copy may be required to be certif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or,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by a representative having the right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agreement;	(i) 계약서 사본, 사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 계약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증될 것
(ii) an extract of the agreement consisting of those portions of that agreement which indicate the parties, as well as the rights licensed and their extent, which extract may be required to be certif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or,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by a representative having the right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as being a true extract of the agreement.	(ii) 실시권 및 그 범위, 당사자를 명시한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된 계약서의 발췌본, 발췌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당해 계약서의 진정한 발췌본인 것으로 인증될 것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holder who is not a party to the license agreement give its express consent to the license in a document signed by such co-holder.	(b)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러한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실시권 문서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Where the license is not a freely concluded agreement, for example, it results from operation of law or a court decis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be accompanied by a copy	(c)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이 아닌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청시 실시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문서를 발급한 기관, 공증

원문	번역
of a document evidencing the license. A Contracting Party may also require that the copy be certified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document or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or, wher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by a representative having the right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인, 다른 공공관할 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 문서와 일치함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Supporting Documents for Amendment of Recording of a Licens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amendment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following:	(3) [실시권의 등록 변경을 위한 첨부서류] (a)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 변경 신청에 대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requested amendment of the recording of the license; or	(i) 실시권의 등록 변경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ii) an uncertified statement of amendment of license, signed by both the holder and the licensee.	(ii) 권리자와 실시권자 양측이 서명한, 실시권 변경에 대한 비인증 진술서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y co-holder who is not a party to the license contract give express consent to the amendment of the license in a document signed by such co-holder.	(b)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러한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실시권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Supporting Documents for Cancellation of Recording of a Licens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license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following:	(4) [실시권의 등록 취소를 위한 첨부서류]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requested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the	(i) 실시권의 등록 취소를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원문	번역
license; or	
(ii) an uncertified statement of cancellation of license, signed by both the holder and the licensee.	(ii) 권리자와 실시권자 양측이 서명한, 실시권 취소에 대한 비인증 진술서
(5) [Security Interests] Paragraphs (1) to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the recording, amendment of the recording and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a security interest.	(5) [담보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담보권의 등록 및 그에 대한 변경·취소 신청에 준용한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a호 (xi)의 "전용실시권", "독점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정의는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가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모두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률이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모두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요건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라이선스 유형을 기재하는 것으로 제한됨.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그러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xi)에 따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됨¹⁵⁵⁾
-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PLT 규칙 제17조 제2항을 모델로 하고 있음. 단 차이점은 PLT에서는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이 아닌 경우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임. 또한 실시권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인 경우, 실시권 등록 요청 시 계약의 발췌본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함¹⁵⁶⁾
-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a호에서는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인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실시권 등록 요청에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서 발췌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즉,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서 발췌본을 그러한 문서로 승인하여야 하며 둘 중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인지는 신청인이 결정함¹⁵⁷⁾
-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조약 제10조 제2항 b호에 따라, 언급된 문서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

155) Note on Regulation R13.01.

156) Note on Regulation R13.02.

157) Note on Regulation R13.03.

음¹⁵⁸⁾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17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17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함

158) Note on Regulation R13.06.

14. 제14조 소유권 변경 기록의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원문	번역
Rule 14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제14조 소유권 변경 기록의 세부사항
(1) [Content of Request]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under Article 21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1) [기재사항]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21조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에 대해 다음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a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is requested;	(i) 명의변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ii) the number of the registration concerned by the change;	(ii) 명의변경과 관련된 등록번호
(ii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iii) 양도인의 성명·주소
(iv) the name and address of the new owner;	(iv) 양수인의 성명·주소
(v) the date of the change in ownership;	(v) 명의변경 날짜
(vi) where the new owner is a legal entity, the legal nature of that legal entity and the State, and, where applicable, the territorial unit within that State, under the law of which the said legal entity has been organized;	(vi)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과 법인 설립 국가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법인 설립 국가의 행정지역명
(vii) the name of a State of which the new owner is a national if he/she is the national of any State,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new owner has his/her domicile, if any, and the name of a State in which the new owner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f any;	(vii) 양수인이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국가명, 양수인이 자신의 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거소가 있는 국가명, 그리고 만약 양수인이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명
(viii) where the holder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viii) 양도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

원문	번역
(ix) where the new owner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ix) 양수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
(x) where the new owner is required to have an address for service or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ch address;	(x) 양수인이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xi) the basis for the change requested.	(xi) 명의변경의 근거
(2) [Requirements Concerning Supporting Documents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Resulting From a Contract]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resulting from a contract be accompanied, at the option of the requesting party, by one of the following:	(2) [계약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위한 첨부서류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으로 인한 명의변경 신청이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 copy of the contract, which may be required to be certified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contract;	(i) 계약서 사본(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 의해 원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ii) an extract of the contract showing the change in ownership, which may be required to be certified by a notary public or any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y, as being a true extract of the contract;	(ii) 명의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발췌본 (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 의해 계약서의 진실한 발췌본으로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iii) an uncertified certificate of transfer signed by both the holder and the new owner;	(iii)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비인증 양도증명서
(iv) an uncertified transfer document signed by both the holder and the new owner.	(iv)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비인증 양도확인서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4조는 조약 제21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STLT 제11조 제1항 b호 내지 f호를 모델로 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21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4조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21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라. 쟁점 및 후속과제

15. 제15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or Address)

원문	번역
Rule 15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or Address	제15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under Article 22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22조에 따른 성명 및(또는) 주소 변경 기록이 다음의 기재사항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i)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ii) where the holder has a representat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representative;	(ii) 디자인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iii) where the holder has an address for service, such address.	(iii) 디자인권자가 송달용 주소를 가진 경우, 그 주소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5조는 조약 제22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22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5조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22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6. 제16조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원문	번역
Rule 16 Details Concerning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제16조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 mistake under Article 23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채약당사자는 조약 제23조에 따른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다음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a correction of mistake is requested;	(i)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이라는 취지의 기재
(ii) the number of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cerned;	(ii) 관련 출원 또는 등록 번호
(iii) the mistake to be corrected;	(iii) 정정되어야 할 오류
(iv) the correction to be made;	(iv) 정정사항(정정내용)
(v)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ing party.	(v)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6조는 조약 제23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있어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6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23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다. 쟁점 및 후속과제

- 시행규칙 제16조 대한 쟁점 및 후속과제는 조약 제23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7. 제17조 국제표준양식 견본 (Model International Forms)

원문	번역
Rule 17 Model International Forms	제17조 국제표준양식 견본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ublish the Model International Forms established by the Assembly under Article 26(2)(ii).	국제사무국은 조약 제26조제(2)항제(ii)목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국제표준양식 견본을 발행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약 제26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국제사무국이 국제표준양식의 견본을 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관련 국내법

- 시행규칙 제17조에 대한 국내법은 조약 제26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같음

18. 제18조 조약 제22조제3항제a호에 따른 만장일치 요건 (Requirement of Unanimity Under Article 25(3)(a))

원문	번역
Rule 18 Requirement of Unanimity Under Article 25(3)(a)	제18조 조약 제22조제3항제a호에 따른 만장일치 요건
Amendment of the following Rules shall require unanimity:	다음 규정의 개정은 만장일치가 필요함:
(i) Rule 2(viii) and (ix);	(i) 조약 제2조제(viii)목과 제(ix)목;
(ii) Rule 6;	(ii) 조약 제6조;
(iii) Rule 12(3);	(iii) 조약 제12조제3항;
(iv) the present Rule.	(iv) 현행 규정.

가. 해설

-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약 제22조에 관한 세부사항이자 2024년 11월 리야드 외교회의에서 새롭게 편입된 사항임
- 규칙 제17조는 특정 규칙의 경우 모든 투표 참가자의 만장일치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며, 중요한 규칙이나 기본적인 조약의 운영원칙을 변경함에 있어 신중하고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위함임
- 개정 시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그리고 현재 조항인 시행규칙 제18조임. 특히 제18조를 개정 시 만장일치가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만장일치 요건이 임의로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보장함

나. 쟁점 및 후속과제

- 특이 쟁점 없으며 국내법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

제3장 결론

- 2024년 외교회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절차에 있어서 국제적 조화와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향후 디자인법조약은 그간 출원인들이 겪어왔던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WIPO 회원국 및 조약 가입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디자인법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 즉 조약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음
- 조약 제4조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약에서 나열된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음. 즉 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출원시에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함.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조항으로 인한 국내법의 시급한 개정 수요는 없음 다만, 제4조 제2항의 ‘정보표시’의 경우 ① 해외출원 시 해당 국가의 출원서의 기재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국내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 국내법에서 정보표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약 제5조 제2항 제b호의 경우는 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만을 기준으로 할 때 ① 조약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고 가입하는 방안, ② 제5조 제2항 제5호를 제외(유보)하고 가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국내법의 개정에는 별도 검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내용은 단지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전반에서 통일성 있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따라서 조약 제5조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법제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 규칙의 개정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조약 제7조의 경우 디자인 공개의 유형에 대해 정함이 없으나, 우리 법은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제36조 제1항 단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조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취지(재출원으로 인한 부당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방지)를 고려하여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디자인법조약은 우선일(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기산하나, 우리 법은 국내 출원일(제2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기산하기 때문에 조약과의 불일치가 존재함. 이에 디자인 분야 국제적 추세 및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우선일로부터 기산)이 필요할 것 이나 해당 조항의 경우 특허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약 제10조는 같은 날 2 이상의 비밀디자인출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로서 우리 법 제46조(선출원) 조항과 관련이 있음. 이는 비밀디자인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2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어떤 것을 등록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하여 거절결정 확정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함.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56조에서는 공개 시기(즉시 또는 비밀기간 경과 후 공개 여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① 비밀디자인 청구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6조에 “비밀보장기간 경과 후 게재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거나 ② 타인 간에만 협의불성립을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그러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개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대상 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기간은 디자인법조약 규정과 충돌하지 않음. 다만 디자인보호법에는 기한만료 이후 연장신청이나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함. 예컨대 법 개정을 통해 ① 기한만료 후 연장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 현행법대로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만 가능하게 할 경우와 ②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조약 제15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수수료 및 등록료 미납 등 절차보정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는 가능하나, 재심사 청구의 추후 보완은 불가 하여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19조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약 제15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가 우리 법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완전히 동일 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해당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요청됨
- 조약 제16조와 관련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하여 우선권 주장 의 정정 또는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일부 불합치 부분이 존재 함. 우리 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않아 조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2 제4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가 허용되는 반면, 디자인법조약에서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우리법과 조약이 불일치하는 부분임

- 조약 제17조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만 설정 등 효력이 발생하므로 디자인법조약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및 제38조는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불일치가 존재함
- 조약 제23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이어서 주체적·시기적 요건이 조약과 상이함. 따라서 등록 후 명백한 오기를 권리자가 발견한 경우, 수정 가능한 오류라면 권리자가 등록원부 외에 디자인 공보에 대해서도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조약 제31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제5조 제2항 b호를 배제하고 조약에 가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① 국내법의 개정 후 조약에 가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② 국내법의 개정 없이 제5조 제2항 b호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고 조약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디자인법조약의 상세 내용과 함께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불합치가 있는 부분을 검토한 바, 향후 디자인법조약과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 정합성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법의 개정 및 디자인법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붙임 1] 2024 WIPO 외교회의- DLT와 Regulation에 대한 검토 및 아국 대응 시나리오

우리 청 기본 입장

DLT 채택에 대한 우리 청 기본 입장

CLUSTER A

일반원칙: Article 1bis

출원(출처공개): Article 3(1)(a)ix

출원일 기록을 위한 요소: Article 5(2)~(5)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Article 17(2)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본문 삽입 vs. 결의: Article 22/Resolution

장비·기술 및 인프라 제공: Article 22/Resolution (2)(a)(ii)

참석비용 및 자금 관련 협약: Article 22/Resolution (2)(b)

디지털 라이브러리 Article 22/Resolution (3)(a)

수수료 감면 Article 22/Resolution (3)(b)

국제 표준 양식: Article 23(1)

CLUSTER B

분할출원: Article 2(1)

출원일 지정을 위한 요건: Article 5(1)

권리회복에 관한 조항의 성격: Article 13

우선권 회복에 관한 조항의 정리: Article 14(2)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Article 22(2)/Resolution

비공개 최소기간의 기산점: Rule 6

교신의 기간: Rule 7(7)(ii)

실시권 기록 관련 서류: Rule 13(2)(a)(i)

CLUSTER C

강제 대리: Article 4(2)(b)

공개와 신규성: Article 6

기간 제한: Article 12(2)

CLUSTER D

개도국 참석에 대한 지원: Article 24(1)(c)

국제표준양식: Article 24(2)(ii)

발효요건: Article 28(2)

모니터링: Article 24(2)(v)

CLUSTER E

EU 대의권: Article 24

규칙 개정: Article 24

<외교관계 대응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서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디자인법조약(DLT) 가입을 대비한
국내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 2024년 12월

발행인 : 최 규 완

발행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TEL : 02-2189-2600

이용허락유형	표시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디자인법조약(DLT) 가입을 대비한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http://www.kipo.g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Tel. 02-2189-2600,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240-3 13500
DOI : 10.8080/P9791168842403